

2022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재정과 정치의 조화 :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2022년 6월 10일(금)~11일(토), 1박 2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아라컨벤션홀

| 주최 · 주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공공선택학회, 제주연구원

| 후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두요감정평가법인

/ 차례

□ 프로그램	i
--------------	---

□ 제 I 회의

분과회의(I -1) 고향사랑기부제 / 사회: 민기(제주대)

01. 염명배(충남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3
02.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방향 모색	21
03. 성인재(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53
04. 주현정(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63

분과회의(I -2) 주택정책과 재정 / 사회: 김의섭(한남대)

01. 조무상(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주택공시가격 개선방안 연구	81
02.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	95

분과회의(I -3)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 사회: 김대영(지방세연)

01. 임상수(조선대): 인구로 살펴본 지역경제의 특징	123
02. 박병희(순천대): 지역별 전력 초과생산과 보통교부세 배분	147

분과회의(I -4) 사회보장제도 / 사회: 우명동(성신여대)

01. 남상호(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4대보험에 대한 부담과 혜택의 비교분석	169
02. 최병호(서울시립대):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185

분과회의(I -5) 공공선택과 재정 / 사회: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01. 김대진(서울시립대):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와 예산배분	별책
02. 이준범(서울대):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에 관한 연구	211

Contents

□ 제 II 회의

분과회의(II-2) 공공사업 경제성 분석 / 사회: 박병희

- 01. 우명동(성신여대): 공공사업 경제성분석의 사회경제적 의의 소고 237
- 02. 김상기(지방행정연구원): Big-Data를 활용한 증거기반 조사기법 사례 253

분과회의(II-3) 차기정부 재정개혁 / 사회: 최병호

- 01. 김상철(한세대): 윤석열 정부 경제질서의 원칙과 과제 287
- 02. 박노욱(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 혁신을 위한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방안 303

분과회의(II-4) 재정지출과 권리보호 / 사회: 안진(전북대)

- 01. 정성호(재정정보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조정 331
- 02. 이정국(두요감정평가법인, 가천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동차정류장(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 337

Program

시 간	내 용	장 소
13:00~13:30	등록 및 안내	
13:30~13:40 (10분)	개회식 개회사: 옥동석(한국재정정책학회), 정성호(한국공공선택학회) 감사장 증정	대회의실
13:40~14:10 (30분)	특별강연: 오연천(울산대 총장), 주제: 공공가치	대회의실
14:10~14:20	사진촬영 및 회의장 정리	
제 I 회의 14:20~15:50 (90분)	분과회의(I -1) 고향사랑기부제 / 사회: 민기(제주대)	대회의실
	※ “고향사랑 기부제” 주제의 분과회의(I -1)과 (II -1)은 연속된 회의입니다.	
	제1주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발표: 염명배(충남대)	
	제2주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방향 모색 발표: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과회의(I -2) 주택정책과 재정 / 사회: 김의섭(한남대)	세미나실 I
	제1주제: 주택공시가격 개선방안 연구 발표: 조무상(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토론: 신상화(충남대), 정범식(더편한 세무법인)	
	제2주제: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 발표: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 이종하(조선대),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과회의(I -3)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 사회: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 II
	제1주제: 인구로 살펴본 지역경제의 특징 발표: 임상수(조선대) 토론: 윤성일(강원대), 조계근(강원미래전략연구원)	
	제2주제: 지역별 전력 초과생산과 보통교부세 배분 발표: 박병희(순천대) 토론: 김종웅(대구한의대), 강병구(인하대)	
	분과회의(I -4) 사회보장제도 / 사회: 우명동(성신여대)	세미나실 III
	제1주제: 우리나라 4대보험에 대한 부담과 혜택의 비교분석 발표: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성효용(성신여대), 이재민(경북대)	
	제2주제: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발표: 최병호(서울시립대) 토론: 김용하(순천향대), 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과 정치의 조화 :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시 간	내 용	장 소
	분과회의(Ⅰ-5) 공공선택과 재정 / 사회: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사과대 2220호
	제1주제: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와 예산배분 발표: 김대진(서울시립대) 토론: 이윤진(서원대), 조선희(소방청)	
	제2주제: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에 관한 연구 발표: 이준범(서울대) 토론: 김찬우(금강대), 홍주미(제주대)	
15:50~16:00	휴식	
	분과회의(Ⅱ-1) 고향사랑기부제 / 사회: 민기(제주대)	대회의실
	※ “고향사랑 기부제” 주제의 분과회의(Ⅰ-1)과 (Ⅱ-1)은 연속된 회의입니다.	
	제3주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성인재(행정안전부)	
	제4주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발표: 주현정(제주연구원)	
	패널토론: 강용덕(제주도청), 고경업(제주일보),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김동욱(제주대), 신동철(경남연구원),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과회의(Ⅱ-2) 공공사업 경제성 분석 / 사회: 박병희(순천대)	세미나실 I
	제1주제: 공공사업 경제성분석의 사회경제적 의의 소고 발표: 우명동(성신여대)	
	제2주제: Big-Data를 활용한 증거기반 조사기법 사례 발표: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패널토론: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병구(인하대), 옥동석(인천대), 임상수(조선대)	
제Ⅱ 회의 16:00~17:30 (90분)	분과회의(Ⅱ-3) 차기정부 재정개혁 / 사회: 최병호(서울시립대)	세미나실 II
	제1주제: 윤석열 정부 경제질서의 원칙과 과제 발표: 김상철(한세대)	
	제2주제: 재정정책 혁신을 위한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방안 발표: 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패널토론: 김용하(순천향대), 김우철(서울시립대), 김의섭(한남대), 김종웅(대구가톨릭대)	
	분과회의(Ⅱ-4) 재정지출과 권리보호 / 사회: 안진(전북대)	세미나실 III
	제1주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조정 발표: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제2주제: 도시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 발표: 이정국(두요감정평가법인, 가천대)	
	패널토론: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김현곤(기획재정부), 신상화(충남대),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30~18:00	휴식 및 만찬장 이동	

고향사랑기부제

사회: 민기(제주대)

발표

01. 염명배(충남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02.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방향 모색
03. 성인재(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04. 주현정(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2022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2022. 6. 10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아라컨벤션홀

발표자 : 엄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1 -

[목차]

- I.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II.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의미
- III.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 IV. 향후 과제
- V. 지자체(제주)의 대응전략

- 2 -

I.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고향사랑기부금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9. 28)

☞ 우리나라에서 2007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통칭 : 고향세)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14년만의 결실 ⇒ **법제화** (2021. 10. 19) [법률 제18489호]

▲ 국내 최초 정치권 '고향세' 공약 : 문국현(2007) 대선후보(창조한국당)

▲ 일본 '고향납세제도' 국내 최초 소개 : 박균조(2008)

▲ 고향세 관련 국내 최초 법안 발의안 : 이주영(2009) 의원

▲ 고향세 관련 국내 최초 학술논문 : 염명배(2010) 교수

▲ 전북연구원(2016. 4) 김동영·양성빈·김형오·이중섭 : 시뮬레이션 ⇒ 고향세 수입 예측

▲ 문재인 정부 : 대선공약 ⇒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2017. 7) /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 포함

- 3 -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이나 응원하고 싶은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하면 ⇒ 기부금에 대해서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세제혜택**(세액 공제) +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지역특산물, 관광서비스)을 받는 제도

☞ 지역생산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자극제 역할 기대

■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 : 일본 「**고향(후루사토ふるさと)납세제도**」 (2008.4.30. 도입)

▲ 개념 탄생 : 2006년 3월 「일본경제신문」이 '**고향세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기사화

▲ 공론화 : 2006년 10월 일본 니시카와 카즈미(西川一誠) 후쿠이(福井)현 지사가 '**고향기부금에 대한 공제**' 언급 ⇒ 고향세제도가 정치적으로 공론화 되기 시작

▲ 정치 이슈화 : 2007년 6월에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부가 참의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논란에 불을 지핀

▲ 학문적 연구 시작 : 2007년 10월에 발간된 『고향납세연구회보고서(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2007)

- 4 -

- ▲ 제도 도입 : 2008년 4월 30일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호) 공포
 ⇒ 종전의 **지방세법**에 '기부금 세액공제(제37조의 2)'를 추가하여 **개인주민세제**를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도입 : 이름은 **세금**이지만 성격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 고향납세에 대한 실제 소득공제 시행 : 2009년부터 시작
- ▲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 : 홋카이도(北海道)
- ▲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 : 2008년 81.4억엔 ⇒ 2020년 6,724.9억엔 (82.6배 ↑)



- 5 -

II.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의미

■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특징 : **지방재정 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 지방문제(지방재정 확충, 재정불균형 완화, 국가(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를 중앙정부의 하향식 결정·지원에만 맡기지 않고 ⇒ **[공공(지방재정조정제도) + 민간(기부)] 공동**으로 추진 : (중앙) **top-down** + (지방) **bottom-up** 방식 결합

■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 : 발상의 전환

⇒ **지방재정의 주머니**(지방재정 확보 수단)가 하나 더 생긴 셈 :

[한 주머니는 중앙으로부터, 또 한 주머니는 타 지역 주민(개인)으로부터 채워진다]

⇒ 그런데 두 번째 주머니는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 **지자체 역할 강조** : 민간기부 유도 위한 창의력 및 경영마인드, 마케팅 역량 필요!!

⇒ 경영의 속성 : **자율 + 책임**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필요

- 6 -

■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목적 (다차원적)

- (1)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확충에 기여 (재정부족 문제 해결)
- (2) 대도시와 농어촌 간 세수격차(재정격차) 개선 ⇒ 국가(지역)균형발전 기여
- (3)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생산 및 고용 증대)
- (4) 지방소멸 억제 (인구유입 촉진)
- (5) 애향심, 포용적 성장 의지 고취 : 고향 및 농어촌의 중요성 재인식
⇒ 고향 및 농어촌에 대한 건전한 기부 의사 증가
- (6) 지방경영시대 특성 발휘 : 지자체 간의 경쟁 촉진
⇒ 기부금 유치 위한 자발적 노력 경주
- (7)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직접적 연결고리 형성 : 지자체가 기부자의 의사 존중
⇒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 신뢰관계 형성 (※관계인구 창출)

☞ 가장 핵심적 목적 : 지역(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 “국가(지역)균형발전”

- 7 -

■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단점)

- (1) 지방자치 원칙 등 위배 :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거주 지자체가 세액공제 (지방세의 일부를 타 지자체로 이전)
⇒ 지방자치 원칙, 조세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위배 / 기부금의 용처를 명시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외지인에 의해 제약받음
- (2) 정책목적달성 가능성 불투명 :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가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존 ⇒ 따라서 반드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예 : 재정 취약 지자체로 더 많은 기부금이 유입될 것)는 보장 불투명 / 기부금 규모 적음
- (3) 세수 안정성 훼손 가능성 :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는 조세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세수 예측성(세수전망)이 부정확하고 세수 추계 불안정
⇒ 재원의 불안정성 ⇒ 정규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 항목으로 인정 곤란

- 8 -

(4) 재원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과열경쟁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 지자체, 중앙정부, 기부자 간의 이해관계 상충(trade-offs) ⇒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움 / 기부금 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가능성
 ⇒ 지자체가 충분한 지역경쟁력(내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부금 유치경쟁(쟁탈전) 과열화 / 지역감정 및 지역갈등 악화 / 모금목표 할당, 준조세화 / 기부 강요, 호객행위 및 구걸(solicit) 행위 우려

(5) **답례품 경쟁이 과열**될 경우 : ‘고향사랑’이라는 순수한 **본질 왜곡**, 지역 간 또 다른 **세수 불균형**(답례품을 둘러싼 새로운 부익부-빈익빈 현상) 야기 가능성

⇒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반쪽의 효과?**

☞ 세제혜택 미흡 / 수직적 형평화 > 수평적 형평화

☞ 가장 큰 딜레마 : **자발적 기부** vs. **재정형평화**

☞ **단점**은 줄이면서 **장점**을 강화하는 전략 필요! ⇒ 복잡

⇒ 많은 노력 필요!

- 9 -

III.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기부주체·대상**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한정 (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2) **답례품** :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 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3) **기부금 운용**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에 사용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 10 -

- (4) 모집·홍보 :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지자체 광고로만 모금 홍보가 가능하며, 개별적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
- (5) 개인 및 기관 처벌 :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공무원) :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 : 법 위반시 1년 이내 기간 동안 지자체의 모금·접수 제한 및 위반사실 공표
- (6)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 16.5% (국세+지방세)
 ■ 시행령 (행정안전부 주관) : 제정 2022. 5. 6 ⇒ 입법예고 2022. 5. 6 ~ 6. 15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모금방법·절차 / 위반 시 제재 (모금 제한 기간) / 광고
 매체 (홍보수단) / 접수방법·절차 / 전문기관 위탁 / 결과 공개
 △ 답례품 선정·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 답례품(공급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운
 영 / 답례품 금지품목 추가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 고향사랑기금 설치 / 기부금의 15% 이내 경비 허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
 ■ 표준조례 제정 작업 (행정안전부 주관)

- 11 -

- 법안(「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평가
- ☞ 이 법안의 원 취지는 기부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려는 것
- ▲ 그런데, 법사위 논의 거치면서 유인책(incentive) 실종 + 규제책(penalty) 강화 :
 ⇒ 민간의 기부 유인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보다는
 ⇒ 기부 행위의 부작용을 막고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제 일변도의 법안 내용
- ☞ 본래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 초래
 ⇒ 이 제도의 정책효과 및 성공 가능성 위축
- ▲ 과연 국민들이 이런 규제를 뚫고서도 충분한 기부를 하려고 할 것인가 심히 우려
 ⇒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부 장려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 [일본은 (거의) 전액 공제 / 우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그 이상은 부분 공제]
 * [일본은 각종 유인책 (금전적, 행정적) : (예)원스톱 특례제도 → 기부 용이하도록]
 ☞ 일본의 고향세에 비해 우리의 고향세는 "더한층 깊은 '애향심'(부담 감수) 요구"

- 12 -

IV. 향후 과제

■ 고향사랑기부제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 제도의 법적 도입만으로 지자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주는 만능책은 아니다

☞ 법제화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 '시작' 단계!

■ 고향사랑기부제 :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도

⇒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 (-)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비해야 정책실패 방지할 수 있다

■ 법제화 이후의 과제 : 이 제도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응하고 정책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하는 작업 ⇒ 단점을 줄이면서 장점을 키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 병행 필요! ☞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노력 필요

⇒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 의식 독려, 기부유인(incentive) 극대화, 기부흐름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13 -

■ "첫술에 배부르랴?" ⇒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

▲ 무엇을 할 것인가? : 3가지 분야 탐구 필요

① 기부자 측 연구 : 잠재 기부자 조사·발굴 및 성향(기부 의사, 답례품 선호) 파악

② 지자체 측 대응방안(전략) 연구 : 사업계획, 답례품, 홍보 등

③ 일본사례 분석 : 일본사례 벤치마킹 ⇒ 우리와 유사 여건 발굴·적용

▲ 누가 할 것인가? :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역할분담

① 중앙정부 : 운동장(play ground) 조성 및 경기규칙(play rule) 제정 (경기촉진 + 공정경쟁) ⇒ platform 및 system 구축 &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 담당

[예] 시행령 제정, system 구축 (기부금 납부·접수·세액공제 / 답례품 유통망)

* 수도권에 홍보관 개설 (지역특산물 판매 및 지역사업 소개, 기부금 모집 대행)

② 지자체 : 실제 경기자(player) 역할 (경쟁) / 이 제도의 주도권은 지자체 (하수인이 아닌 주역!) ⇒ 최대한 자율성·결정권을 가지고 독창적 전략 구사

[홍보] * 광역지자체 : 전국 대상 제도 자체 소개·홍보 (일반적)

* 기초지자체 : 보다 더 구체적인 지역홍보·사업계획·답례품 제시

- 14 -

1. 단기 과제 (제도구현 단계) : 제도정착, 활성화

■ 일단 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 제도의 충실도 강화 및 안정적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작업 ⇒ “개인기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깜깜이)

⇒ 시행착오 줄이고 예측력 강화 필요! ⇒ 정책효과 불확실성 해소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측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기부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왜 얼마나 흘러가는가?” 추적

☞ 당초 정책의도와 다른 결과 가능성

[예]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도 도입 초기(2009년)에는 기부금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오사카시(大阪府) : 47개 도도부현 중 기부금 수입 1위)와 수도권(카나가와현(神奈川県 : 4위), 사이타마현(埼玉県 : 10위))으로 집중되는 ‘역류현상’ 발생

- 15 -

■ 잠재 기부자 파악 : [예] 각지로부터 입향민(入郷民) 현황 (자료 : 염명배(2010))

▲ 서울 거주자 중 출신지역 비율 (%) : 2000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8.2	2.3	1.5	1.2	1.4	0.9	0.3	7.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	4.0	7.7	8.1	10.8	6.1	3.6	0.5

▲ 경기도 거주자 중 출신지역 비율 (%) : 2000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8.3	1.9	1.2	1.8	1.0	0.8	0.2	30.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	4.5	8.7	6.8	9.0	5.6	3.1	0.4

■ 지속적인 고향사랑기부 장려 홍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2019) : 응답자 96%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모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 61.3%)

⇒ 농어촌·기부금의 중요성, 세제혜택 등 적극 홍보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 공동노력

- 16 -

■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1) 시스템 구축 : ① 행정시스템 : 기부금 납부 및 세금환급 시스템 구축(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기금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답례품 선정위원회 ⇒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② 유통시스템 : 답례품(지역특산물) 생산 및 배송 관련

(2) 위탁 사업자 선정

☞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업무를 관리·운영하고 답례품 관련 업무(기금관리·운용 및 답례품 배송·결재·세액공제 등)를 담당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행정노력과 비용 수반 ⇒ 대행업체 선정 필요?

▲ 일본의 경우 관련 업무를 민간(사설)업체 위탁하는 사례 : (주)Trust Bank (후루사토 초이스), (주)사토후루 ⇒ 위탁수수료(정액(월3천엔, 연4만엔) or 비례(10~15%)) 징수

▲ 우리나라 업무대행 위탁기관의 선정 방안 :

- ①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 ②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기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 ③ 민간업체(기업)를 선발하는 방안

- 17 -

■ 일본사례 벤치마킹 :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 대표적 성공사례 발굴

⇒ 타산지석(他山之石) + 반면교사(反面教師)

▲ 나가사키현 히라도(平戸)시(市) (2014년 세수 1위) : 답례품 다양화 ⇒ 고향납세 기부금 2013년 3,910만엔 →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년만에 10배 이상 증가

⇒ 인구유출이 지속되던 거리가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

▲ 나가노현 아난(阿南)정(町) : 고향납세제도 도입 이전에는 휴경지가 많았지만 쌀을 답례품(주민세 1만엔 이상 기부자에게 20kg)으로 보내면서 쌀 수요 증대

⇒ 상당수 주민이 경작 다시 시작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上士幌)정(町) : '슬로타운(Slow-Town)' 이미지 특산물 ⇒ 마을 인구의 5배가 넘는 고향세 기부자 유치

⇒ 지역총생산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 18 -

■ 답례품 : 지역특산물(유형) 이외 다양한 관광·체험형 상품(무형)

- ▲ 미야자키현 아야(綾)정 : 1박2일 지역여행 항공·숙박권 및 렌터카 제공
- ▲ 니가타현 나가오카(長岡)시 : '지역 불꽃놀이 축제' 특별관람석 초대
- ▲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下關)시 : 수족관 관람권 제공
- ▲ 오이타현 오이타(大分)시 : 다카사키(高崎) 자연동물원의 야생 원숭이 우두머리 이름 붙일 권리 부여 (추첨)
- ▲ 나라현 이카루가(斑鳩)정 : 후지노키 고분(藤ノ木古墳) '전세(단독)관람권' 제공
-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上士幌)정 : 열기구 탑승 서비스
- ▲ 홋카이도 미카사(三笠)시 : 스키장 리프트 사용권 50% 할인 (1년간)
- ▲ 카가와현 히가시카가와(東かがわ)시 : 1일 市長
- ▲ 로컬철도 운전체험
- ▲ 지역방송국에서 기부자의 노래 녹음·방송
- ▲ 빈집 관리대행

- 19 -

■ 지역특화 사업

-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北海道 上士幌)정 : 인구유입을 위한 육아, 이주지원
- ▲ 가나가와현 가마쿠라(神奈川県 鎌倉)시 : 특산물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 ▲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広島県 神石高原)정 : 유기견 보호 및 입양 사업

■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 ▲ 지역별 답례품의 중복성, 차별성 및 경쟁 우위성, 소비자 호감도·인기도 확인
- ▲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답례품 중복**되지 않도록 ⇒ 답례품 차별화

△ [예] 광역지자체 답례품 :

- ① 기초지자체 몇 군데를 엮는 관광·음식·숙박·체험 패키지 상품
- ② 역내 기초지자체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

■ 일본의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 **답례품 경쟁력지수** 산정

- 20 -

2. 중·장기 과제 (제도개선 단계) : 단점보완, 제도개선

■ 제도의 문제점 및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해서 성공적 제도로 완성하는 작업

1) 기부 흐름의 양적 강화 : 기부유인 촉진 전략

⇒ 기부금 내리는 사람은 적은 데 받으려고 할 곳이 많으면 지역 간 과열경쟁!

■ 우리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비해 기부유인이 매우 취약

▲ 일본 : 고향세 기부액이 도입 첫해 2008년 81.4억엔 ⇒ 2020년 역대최고인 6,724.9억엔으로 13년동안 82.6배 증가하는 폭발적 신장세

▲ 일본정부의 노력 (유인책 강화) :

- 자기부담금 인하 : 5,000엔 ⇒ 2,000엔
- 세액공제 상향조정 : 지방세(주민세) 특례분 공제 한도액 주민세의 10% ⇒ 20%
- 고향납세 편의성 증대 : 원스톱 특례제도 (자동 처리)
- 지자체의 자발적 답례품 제공 허용

- 21 -

■ 기부유인 제고 방안

① 기부상한을 높이는 방안,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③ 답례품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 등

2) 기부 흐름 질적 강화 : 정책성과 제고 전략

■ 우리의 고향세제도는 일본에 비해 지자체 간 재정형평화 효과 매우 취약

⇒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으로 재원이 많이 흘러 들어가도록 고향세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 간 재정형평화(수평적 형평성) 효과 강화 방안

① 기부대상 지자체 조건 강화 [예 :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 ② 기부금 용도 및 기부금 사업 종류 제한 [예 : 지역경제 발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국한] ③ 지역별 세액공제율 가중치(응원지수) 차등화 [예 : 재정력 하위 지자체에 대한 기부에 높은 세제혜택 부여] ④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 [예 : 지방세 공제율 인상]

- 22 -

V. 지자체(제주)의 대응전략

■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경영전략** 강화

⇒ 지방경영시대 경영전략 : ① '플레이스-마케팅(Place-Marketing)' 전략, ② '지역브랜드(local brand)' 전략, ③ '고객관계관리(CRM)' 전략, ④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 등

■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

■ 지자체의 **지기지피(知己知彼)** 전략 : 우선 우리 지역이 가진 자체적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요인 발견 (SWOT 분석) ⇒ [약점(W)보완 + 강점(S)강화 전략]

⇒ 우리 지역의 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가? **지기(知己)**

	강점(S)	약점(W)
기회(O)	전략 A	전략 B
위협(T)	전략 C	전략 D

- 23 -

■ 제주의 **약점** : 성공한 출향민이 적다 ⇒ **보완전략** : 출향민에만 너무 의존하기 보다는 제주에 호감을 가지고 응원하고 싶어하는 개인 발굴 (제주 한달 살기 경험자, 제주 관광·여행 경험자, 제주에 관심·지원의사 있는 사람 등 :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 기부 설득 (예산 수립 : 설문조사 + 응답 기념품 비용 등)

■ 제주의 **강점** : 독창적·매력적 지역특산물이 많다 (특산품(농·수산물·가공식품) + 여행·관광·체험 상품) ⇒ 답례품 경쟁력 **강화전략** [예 : 제주도 1박2일 항공·숙박·렌터카·식사권 패키지 무료 제공, 제주도 미술관·박물관·관광지 순례 프로그램, 대형 문화예술·스포츠행사 초대, 올레길 걷기행사 초대, 제주도 자연유산·한라산 탐방, 해맞이 행사(일출봉·섭지코지) 초대, 섬 속의 섬(마라도·우도·비양도·가파도) 탐험, 해양스포츠(해녀·요트·스쿠버다이빙)·승마체험, 제주감귤·한라봉·천혜향·녹차·삼다수 등 농산물 세트 및 가공음료, 제주옥돔·갈치·다금바리·해산물 세트, 도내에서 쓸 수 있는 특산물 **지역상품권**(온라인+오프라인) 제공, 명예도민증 발급(입장료 및 특산품 할인행사)]

- 24 -

■ 제주도 전략 : 재원의 흐름 방향 예측 :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도로 유입(流入)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 유출(流出)될 것인가?

■ 재정자립도 (% : 2021년 예산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80.6	49.8	48.9	56.1	44.5	45.1	54.4	64.0	63.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8.3	32.9	36.9	27.7	27.0	29.8	38.9	38.7	48.7

⇒ 제주 : 30%대 재정자립도 (전국 11위) ☞ 평균 이하

⇒ 제주도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유입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재정형평성 개선을 위해 바람직

- 25 -

■ 잠재 기부자 파악 : 각 지자체 거주자 중 제주 출생자(출향민) 비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5	0.6	0.1	0.3	0.2	0.2	0.4	0.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2	0.1	0.2	0.1	0.2	0.2	0.3	78.4

⇒ 대부분 제주에서 나서 제주에서 살고 있다 (토박이)

[제주 출신 타지 거주자 비율 0.6% 이하] [부산-서울-경기-울산]

■ 입향민(入鄕民) 현황 : 타지 출생 제주도 전입자 현황 (% : 2000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7	2.0	0.5	0.4	0.5	0.2	0.2	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	0.6	1.1	1.4	5.7	1.5	1.8	78.4

⇒ 오히려 외지에서 제주도로 전입비율 높다 [서울-부산-전남 출신 10.4%]

⇒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도로 많이 들어올 것인가? [기부금 증가 → 재원확충]
아니면 타지로 많이 빠져나갈 것인가? [지방소득세 환급 → 재원감소]

- 26 -

- 제주도가 **출향민** 수가 적어 기부금이 걱정이라고? ⇒ 걱정할 것 없다!
- ⇒ 일본 사례 벤치마킹 (노력하기에 달렸다!)
- ▲ 사례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가미시호로(上士幌)정(町)
- ⇒ **애향심** 의존형이 아닌 철저하게 **가치** 위주의 지역마케팅 성공
- △ 일본 홋카이도 중심부의 다이세쓰(大雪)산을 끼고 있는 인구 5,000명 미만 (4,906명)의 작은 산골마을
- (산림 76% : 주요산업은 쌀, 낙농, 임업 등 1차산업 및 온천 관광업)
- △ 가미시호로 정은 **부유한 출향(出郷) 인사**가 없다 보니 첫째 고향납세가 1건에 불과 ⇒ 그러나 2013년부터 전국에서 고향납세(기부금)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 ⇒ 2014년도에 약 **10억엔**에 달하는 고향납세(기부금)를 받아 전국 1,741개 기초자치단체(시정촌) 중에서 고향납세 세수 3위 차지
- ⇒ 이는 1년 주민세 세수의 **2배**에 달하는 액수
- ⇒ 고향납세 10억엔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2억엔**
- ⇒ 고향납세자(기부자) 수는 2만 6,292명으로 **마을 인구의 5배**가 넘는다

- 27 -

- ⇒ 고향납세(기부금) 수입으로 연간 GRDP(지역총생산)를 **6.6억엔**가량으로 끌어올리고, 8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 ⇒ 지역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유형적 효과 이외에도 1년간 각종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얻은 무형적 가치는 최대 **10.4억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액은 **1,800만엔**
- ⇒ **비결이 무엇일까? : 약점(W) 극소화 & 강점(S) 극대화 전략**
- ☞ (1) 이미지 마케팅 : '**슬로타운(Slow-Town)**' 이미지 표방 ⇒ 무공해 특산물
- (2) 지역자원(청정농산물, 관광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과 환경, 관광 및 교육**을 컨셉으로 한 '마을만들기(후루사토쓰くり : ふるさとつくり)' 추진
- (3) 기부금액의 절반만큼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되돌려줌 (답례품은 쇠고기, 공예품, 꿀 등 23개 품목) ⇒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쇼핑몰처럼 답례품 인기 순위 표시 ☞ 50만엔 이상 기부자에 대해 지역 명물인 **열기구**를 태워주는 서비스도 제공
- (4) 답례품과 운영 경비를 제외한 고향 납세액 순익 35%를 **학교 시설 개선**에 투자 ⇒ 기부자 설득
- (5) 고향납세(기부금) : 신용카드 결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 가미시호로 정과 같은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2014년 기준 전국 1,742개 기초자치단체(시정촌) 중 980곳에서 답례품을 활용한 고향납세 유치 경쟁

- 28 -

■ **지방경영전략** : Place-Marketing(사람 + 기업 + 돈(투자, 구매수요) 유치), 지역 브랜드 강화 전략 ⇒ 기부금 유치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차별적 사업 구상
 ⇒ 우리 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별적·독창적·매력적인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나’를 우선 알자!
 ⇒ 없다면? ⇒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예 : 체험형 / 새로운 조형물, 전시관 건설)
 ⇒ 관광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 (예 :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한달 살기 프로그램, 바다 및 섬 투어 / 갯벌 체험 / 명예도(시)민증 발급 → 여행지 할인)
 ⇒ 기부자 설득 ⇒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 관계인구 강화

■ **지자체 차원의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조직·TF 구성**

[광역]

- ▲ 강원 : 전담조직 신설 (2021. 12) ⇒ 업무추진 로드맵 수립
- ▲ 충남 : 고향사랑TF팀 신설 (2022. 1) ⇒ 고향사랑준비단 구성
- ▲ 전남 : 고향사랑추진단 발족 (2022. 1) ⇒ 제도시행 대책 추진
- ▲ 경북 : 경북사랑기부제 활성화 대응단 구성 (2022. 1) ⇒ 답례품 개발 착수

- 29 -

▲ 전북 : 고향사랑 추진협의체 구성 (2022. 3) ⇒ 도·시·군 합동 TF

[기초]

▲ 전남 영암군·무안군 : 전담조직 신설 ⇒ 대응방안 마련

■ **지자체 준비 사항** : “**3+1 전략**”

▲ [3 전략] : **고객·사업·답례품**

(1) 잠재적 **고객(기부자)** 조사·발굴 : **출향민** 통계 파악, 전북지역 방문·여행객 및 일정기간 체류했던 사람, 전북에 관심 있는 외지인 파악 (**demographic data**)

(2) 매력적인 지역 **사업계획**(기금 사용처) 수립

△ 잠재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 구상 ⇒ 기부금 유치

(3) 경쟁력, 차별성 있는 **답례품**(향토특산물) 발굴·개발 / 답례품 목록(리스트) 작성 (**marketing**) ⇒ 기부금액별 답례품 차등화 (답례품의 종류 및 지급단위 결정) / 지속적 기부 유도 위해 **마일리지(크레딧, 포인트)** 적립제도 실시

△ 일본 사례 벤치마킹 ⇒ 제주도에 적합한 답례품 선정·발굴 (주로 자매결연 지자체 조사)

- 30 -

▲ [1 전략] : 지역 **홍보** (PR)

- △ 홍보수단 :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출향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대상
⇒ 옥외전광판, 도로변·대중교통(버스·지하철)·톨게이트 광고판, 공항·역·버스터미널·지하철역 광고, TV·라디오 방송광고, KTX 내(TV·잡지)광고, 일간지·잡지 광고, 단체 안내편지·팸플렛 우송, 인터넷·SNS 통한 광고 등
[※제주공항에 고향사랑 제주특산물센터]

△ 고객유치 캠페인

- ◆ 내 고향 다시 찾기 운동 / 귀향, 귀촌
- ◆ 우리지역 방문객·이주민 유치 운동 : 관계인구 강화
- ◆ 내 고향 특산물 구매 운동
- ◆ 내 고향 사업지원 운동

- 31 -

■ 발표자 연구업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 * 염명배(2010),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3호, pp.71-111.
- * 염명배(2016), “고향납세(고향기부제) 도입 가능성 연구”, 국회『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발표자료집, pp.7-17.
- * 신두섭·염명배(20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제18집 제4호, pp.145-194.
- * 염명배(2017), “우리나라의 고향세 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3호, pp.27-78.
- * 육동한·박상현·염명배·전지성(2017), 『고향사랑기부제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강원연구원.
- * 염명배(2018), “지역 재정 격차와 고향세”, 『방송대신문』, 제1953호.
- * 염명배(2018),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지방재정』, 2018 제6호, pp.30-51.
- * 국중호·염명배(2018),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2호, pp.73-109.
- * 염명배(2019),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재정정책논집』, 제21집 제3호, pp.63-109.
- * 염명배(2019), “농어촌 살리기 대안, 고향세에서 찾는다”, 커버스토리, 『신용경제』, Vol. 434, pp.24-27.
- * 홍근석·염명배(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pp.189-221.
- * 염명배(2021), “고향세 논의 10년, 다시 고향세를 생각한다 - 고향세 관련 선행연구와 법제화 동향을 중심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61-81.
- * 염명배(2021),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pp.13-28.
- * 국중호·염명배(2021),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pp.69-99.
- * 염명배(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pp.133-181.

- 32 -

감사합니다!!

- 33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표문(제주)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성공적 안착 방향 모색

2022. 06. 10.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ontents

- I.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의 배경 및 목적
- II.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III. 일본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정책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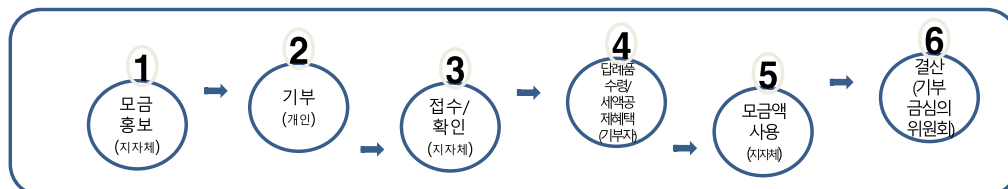
I.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배경 및 목적

I.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의 배경 및 개념

1. 고향사랑 기부금제

1.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 지자체에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2.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3.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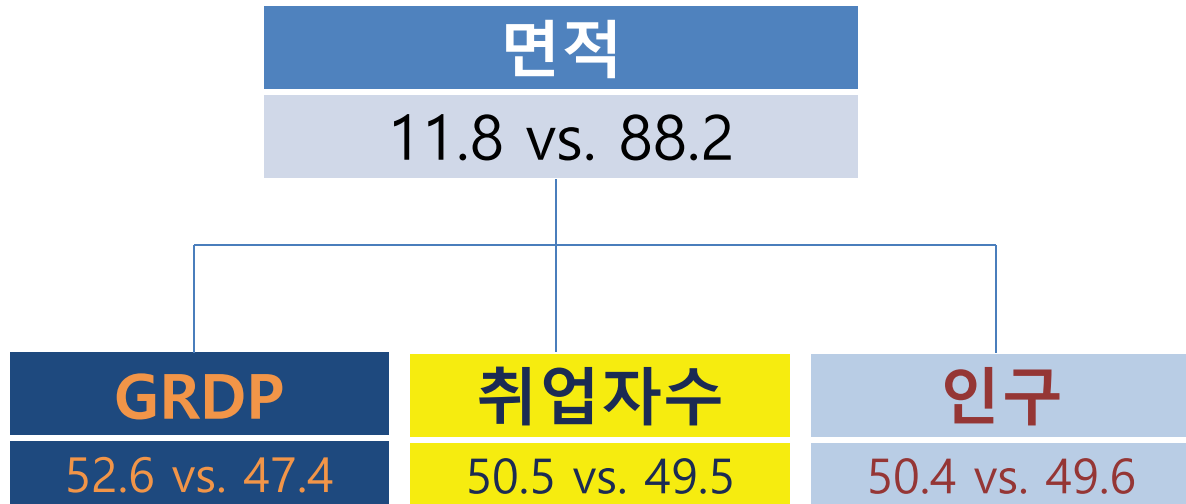
도입배경

- 1) 지역인구감소(2000년~2020년 간) : 수도권 인구 18% 증가,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인구 18% 감소
- 2)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간 균형발전

I.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의 배경 및 개념

1.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배경: 수도권 vs. 비수도권



자료: 인수위원회(2022)

4/59

I.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의 배경 및 개념

1. 고향사랑 기부금제

추진경과

- 1) 2009년 법안 최초발의, 2016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2017년 국정과제 채택, 2020년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행안위 통과, 2021년 10월 법제정
- 2) 법안발의 및 제정 : 20대 국회 총 14건 법안 발의, 21대 국회 총 6건 법안 발의

주요 내용

- 1)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는 개인(법인 불가), 기부처 :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2) 기부액 한도 : 연간 500만원(지자체 합산)
- 3)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기부액 10만원 이하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 4) 세액 부담 비율 국가 91%, 지자체 9%

5/59

I.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의 배경 및 개념

1. 고향사랑 기부금제

답례품과 사업시행

- 1)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한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 관할구역 생산 및 제조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품목(조례)
- 2) 주민복지증진 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와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지 증진

모금 홍보와 처벌

- 1) 광고와 정보 통신 매체 활용(개별모금활동 불가)
- 2) 모금방법 위반 : 호별 방문, 개별통화와 서신송부, 동창회 및 향우회, 개인 SNS 등

기대 효과

- 1)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 2) 답례품 제공(지역 농특산물 및 문화관광상품 등 활용, 관광객 방문 증가, 지역주민 소득 증가와 지역 이미지 개선)

6/59

II. 주요선행 연구 및 동향

7

II. 주요선행 연구 및 동향

1. 주요 선행연구 및 동향

연구	주요 내용(키워드 등)
박균조(2008)	-일본 지방세법령개정안 주요내용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과정 소개
염명배(2010)	-일본 고향납세제도 소개 및 논의,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박상현·이원학(2016)	-일본 고향납세제도 운영 취지, 효과 분석 -우리나라 세제 신설 필요성 제시, -제도도입의 국내 여건 분석 및 논의
김동영외(2016)	-지방소멸 위기 해소 위한 대안, -고향기부제 도입유형 분석, -세원 이전 효과, 재정적 효과분석
신두섭·염명배(2016)	-일본 제도 도입 성과분석('08-'15), -한국형 고향세(고향기부금)제도 도입 방안 -5가지 정책방안제언* (지자체 기부금허용, 세액공제와 세원분담, 자기부담금폐지,답례품 상한설정, 지역별 소득공제를 차등화등)
신두섭·하혜수(2017)	-WTP 추정,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라는 인식, -고령자 및 가구주 등 안정적 여건에 있는 경우 지불의사액 높음
원종학(2017)	-일본에서의 도입 효과 -실제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등 제언
육동한외(2017)	-지역활성화 대책 수단 -지자체에의 영향분석, 공제 상한액 규모 등에 따른 영향분석 실시

8/59

II. 주요선행 연구 및 동향

1. 주요 선행연구 및 동향

연구	주요 내용(키워드 등)
남황우(2017)	-지방재정시스템 관점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분석 -기부의 이전방향 확인 -제도 도입 방안, 납세자 지역선택권 행사 기준 방향 모색
주만수(2017)	-고향기부제도 비판적 평가: 정책목표 달성의 어려움, 다양한 사회적 비용 초래 -문제 최소화 될 때까지 도입 재고
이희석(2017)	-북해도 유바라시 사례 연구 -재정파탄 이후 재정전략으로서 고향납세제도 활용 사례, -기부추진, 활용, 지역활성화 전략 등
심재승(2017)	-일본 제도 분석(기본적 성격, 구조,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고향기부제 도입유형 분석, -지역활성화 전략
신승근(2017)	-국회 제출 법률안 검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현행 기부금법 활용방안, 법인도 기부하도록 제안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 제도 설명
국중호(2017)	-고향납세제도 특성 -운영 상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 제시
염명배(2017)	-의원입법안 및 정부안을 비교분석, 도입 시 각종 쟁점 사항 논의 -한국형 고향세제도 도입 방안 제시
임정빈외(2017)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여부 파악 - 17개 광역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효과 분석
김진아·이유진(2017)	- 일본 당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된 쟁점 소개, 선행연구 논점 종합적 검토 -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9/59

II. 주요선행 연구 및 동향

1. 주요 선행연구 및 동향

연구	주요 내용(키워드 등)
육동한(2017)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 열악한 지방재정 해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을 주장 -지방활성화 대책 수단으로서의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 분석 및 도입방안 주장
이세경(2017)	-일본 고향납세제도가 세수시정효과 미미한 수준,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 확보 및 수요 진작 방향에서 접근 필요 역설
이병산(2018)	-향후 제도 도입 시 기부금에 관한 세액공제혜택 및 답례품 지급 필요 -기부자의 신뢰관계 및 향후 지속적 기부 유도 위해 기부금 공시 규정 제시
국중호·염명배(2018)	-일본의 고향기부액 통계량을 이용한 지자체 간 기부액 동향 계산, 지역간 기부특성 파악, -지자체 간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지 적용자수 변화요인, 기부금액 증가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 -고향납세 적용자 비율이 증가하면 1인당 기부액도 증가, but 기부금액 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않음
류영아·이상범(2018)	-일본 제도 고찰, 도입논의, 국회 제출된 입법안 분석 -향후 제도 도입 위한 주요 방안 제시
염명배(2019)	-2017년의 후속 심화 연구, 정책 최소 출발점을 놓여준 대상 기부문화 확산차원, -기부조건, 세액공제율 및 답례품 제도 문제 등 시범지역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단계적 확대
홍근석·임정빈(2019)	-제도 도입으로 재정여건 개선, 지역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 해소 여부 실증적 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 사용, 지불의사금액 추정: 지자체 재원 확충에 기여, 재정격차 완화에도 도움
조재욱(2019)	-지금까지 일본 운영 현황 분석, 시사점 도출 -제도 도입 부작용 미연 방지 위해 기부주체, 대상범위, 답례품 제공기준, 현행제도와의 조화, 기부금의 투명관리 등 제언

10/59

II. 주요선행 연구 및 동향

1. 주요 선행연구 및 동향

연구	주요 내용(키워드 등)
홍근석·염명배·신두섭 (2019)	-(잠재적)기부자 인식조사, 약50% 도입찬성, 특히 제도 지속성 위해 수도권 20~30대 참석 필요 -제도 정책 목표인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는 다소 부정적 인식 다소 多, -세액공제 비율 현행 계획 적절, 답례품 제도 도입 필요하나 상한선 설정 바람직
유병선·이창림(2020)	-지방 및 농촌의 재정확충에 초점,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에 오히려 재정손실 가능성 제기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개발 및 예시 제시
염명배(2021)	-학술적 논의, 법제화 노력 진행 과정 추적 -우리 고향세제도 문제점 제기, -도입 이후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개선 방향 모색 -법제화 이후 단기적 전략 제언 및 고향세 관련 전문 연구기능 확충 필요성 제기
국중호·염명배(2021)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성숙화 과정에 대한 평가 -지역 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지역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가 고향납세기부 제도의 성숙화화 함께 증가해 왔음을 역설

11/59

Ⅲ.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12

Ⅲ.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1. 일본 후루사토((ふるさと)납세제도: 이하 고향납세제도)도입의 배경

-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납세제도 도입 논의와 경위

- 2006년 10월 이전, 일부 정치인 중에 “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에 세금을 내자 ” 주장
- 2006년 10월, 일본 후쿠이현(福井県) 니시카와(西川)지사의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 주창
- 2007년 6월, 아베(安倍) 자민당 정부의 선거 운동에서 주창(민주당, 대도시 거센 반발)
- 2007년 10월 발간된 “고향납세연구회 보고서(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
 - ✓ 고향의 개념,
 - ✓ 기부금 납부의 유형 및 방법,
 - ✓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고 보다 활용하기 쉬운 제도 도입 고민 등

13/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1.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 구체적 논점
 - ✓ 세(稅)를 분할하는 방식 가능성
 - ✓ 수익과 부담, 과세권, 조세의 강제성, 주민 간의 공평성, 기부금 세제의 응용 가능성 등
- 2008년4월30일,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률(법률제21호)에 의해 조정 지방세법에 기부금 세액공제(제37조의 2)를 추가, 개인주민세 제도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도입
- 2009년, 실제 소득공제 시행(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북해도)

* 이 보고서 말미에 소득세와 관계 규명, 즉 “국가의 역할” 강조: 기존 이 제도가 개인주민세를 지자체간 “수평적 이전”으로 인식,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논의 되던 것을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 보고서로 평가

14/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 및 정책적 목적

-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후루사토납세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

- 도입 목적
 - ✓ 지방창생(地方創生) 도모
 - ✓ 지역경제 활성화
 - ✓ 국가와 지자체간 세원 격차 해소 목적
- 삼위일체개혁과 대대적 재정개혁(세원이양, 지역간 세수격차 줄이기 등)
 - ✓ 당시 지자체 간 세수격차(전국평균 100) ,
 - 광역 : 동경도 174, 오키나와현(沖縄県) 61
 - 기초 : 동경도23구 189, 사이타마시(埼玉市) 81

* 삼위일체개혁(三位一体改革):

15/48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목적

- 고향납세제도 도입 전까지의 논란
 - 이시카와(2007): 도입의 찬반논란
 - ✓ 설문조사 결과, 찬성 50% : 반대 26%,
* 수도권(오사카권 포함) 찬성 46% : 반대 33%
 - ✓ 반대입장 :
 - ① 지방분권을 도시와 지방의 대립구조?,
 - ② 조세이론 상 수익자 부담원칙의 위배

16/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그림1)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고향납세로 일본을 활기치게”)



자료 : 총무성 홈페이지 및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에서 인용(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17/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 :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

- 고향(또는 주민이 응원하는 지역에 일정액(2,000엔)이상의 세금(주민세의 일부)을 '기부'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국세)와 거주지의 주민세(지방세)를 동시에 감면해 주는 일종의 소득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의 개념
 - ✓ 기부(고향세 납부)를 하면 그것을 기부 대상 지역민과 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사용
 - ✓ 반대급부로 기부 금액에 따른 답례품이 기부자에게 전달되는 상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
- 이 제도의 특징
 - ✓ 납세자가 '기부처(지역 및 용도)'를 선택 가능
 -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지원(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도움 줄 수 있는 제도
 - ✓ 지자체가 국민에게 이 제도 추진 호소함으로써 애향심 자극
 - ✓ 지자체의 존재의의와 고향납세의 사용처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 마련
 - ✓ 농어촌 지역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추구

1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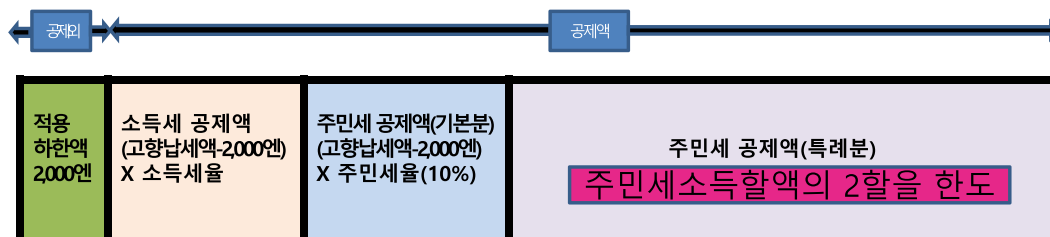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그림2) 총무성 고향납세 기부한도와 공제액의 계산

ex) 연수입 700만엔의 급여소득자(부양가족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가, 3만엔의 고향납세를 하면, 2천엔을 넘는 부분(30,000엔-2,000엔)이 소득세와 주민세로부터 공제됨.



자료 : 총무성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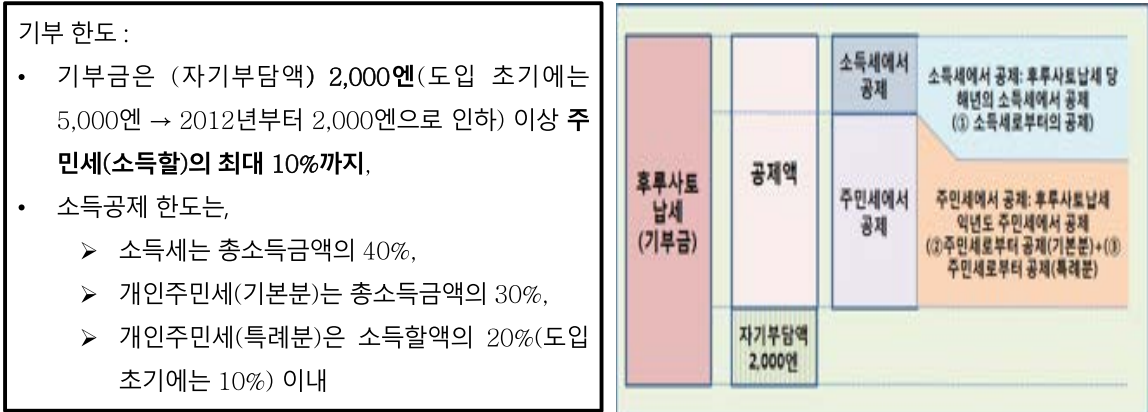
19/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그림2) 총무성 고향납세 기부한도와 공제액의 계산(계속)



자료 : 총무성 홈페이지 참조

20/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 (i) 소득세(국세)로부터의 공제 : (고향납세액-2,000엔) × 소득세 세율
- 소득세로부터의 공제액은 위 표의 ①의 계산식을 결정.
※ 공제 대상이 되는 고향납세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40%가 상한.
※ 소득세 세율은 과세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게 설정되도록 하였고, 그 납세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이용하게 됨.
- (ii) 주민세(지방세)로부터의 공제 : 기본분 + 특례분
㉞ 주민세로부터의 공제(기본분) : (고향납세액 - 2,000엔) × 10%
※ 공제대상이 되는 고향납세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30%가 상한
㉟ 주민세로부터의 공제(특례분) : (고향납세액 - 2,000엔) × (100%-10%(기본분) - 소득세의 세율)
※ 주민세로부터의 공제 특례분은 이 특례분이 주민세소득할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상기 표의 ③계산식으로 결정됨.
㊱ 주민세로부터의 공제(특례분) : (주민세소득할액) × 20%
※ ③으로 계산한 경우의 특례분이 주민세소득할액의 20%를 넘는 경우는 (주민세소득할액) × 20% 적용. 이 경우 ①, ②, 및 ③의 3가지 공제를 합하여도(고향납세액-2,000엔)의 전액이 공제되지 않고 실질부담액은 2,000엔이 넘음.

21/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제도의 추진실적



주: 1. 고향납세수입액 및 건수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을 제외한 고향납세로 인정된 것만 계산
 2. '11년 동북지방 대지진 관련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3. () 내 값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 실적임
 자료: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 7.30. 기준)

22/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처 선택

0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의 선택		2021년 결과 단체수(비율)	2020년 결과 단체수(비율)
- 선택 가능 으로 답한 단 체의 선택 가 능 범위	선택가능	1,736(97.1%)	1,723(96.4%)
	선택불가능	52(2.9%)	65(3.6%)
	분야 선택 가능	1,673(93.6%)	1,661(92.9%)
	구체적 사업 선택 가능	449(25.1%)	418(23.4%)
	* 클라우드펀딩형	285(15.9%)	214(12.0%)

● 고향납세 사용처 분야의 구체적 내용(단체수)

건강, 의료, 복지	1,414	스포츠, 문화진흥	1,156
교육, 인재육성	1,393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1,107
아동, 육아	1,351	관광, 교류, 정주촉진	1,053
지역, 산업진흥	1,285	안심, 안전, 방재	812
환경, 위생	1,201	재해지원, 부흥	296

자료: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 7.30. 기준)

23/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 모집에 필요한 비용(전국 지자체 합계액)

(단위: 백만엔)

구분	금액	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율	전년도 결과
답례품 조달 비용	178,335	26.5%	28.2%
답례품 배송 비용	52,024	7.7%	7.7%
홍보 비용	3,872	0.6%	0.7%
결제 등 비용	15,388	2.3%	2.0%
사무비용 등	53,800	8.0%	8.1%
합계	303,419	45.1%	46.7%

고향납세 모집비용 비율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 7.30. 기준)

24/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제도의 주민세공제액 및 공제적용자수(전국계) 추이



주 : 1. 각연도 계수는 전년중(예를 들면, 2021년도는 2020년 1월1일~12월31일)의 고향납세관련 익년도 공제 적용 상황임
2. () 내 값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 실적임
3. 2020년까지의 계수는 각연도의 '시장촌세과세현황 등의조사' 를 기초로, 2021년 계수는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출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 7.30. 기준)

25/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지정제도

지방세법(1950년법률제226호) 제37조의2제2항및제314조의7제2하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향납세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지정됨(2021년9월17일 현재)(적용), 2021년10월1일~2022년9월30일)

구분	전체단체수		
		지정 신청서 제출 단체수	지정단체수
도도부현(都道府県)	47	46	46
시구정촌(市区町村)	1,741	1,740	1,740
계	1,788	1,786	1,786

자료 : 총무성 보도자료(2021.09.17.),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총무대신의 지정(ふるさと納税指定制度に係る総務大臣の指定)”

26/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미지정단체의 사례(1): 답례품비율 3할초과 및(&) 지역 생산품 이외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작년 11월이후 Amazon상품권 등 금전적 상품권류를 새롭게 답례품에 추가하여 모집한 지자체로 당초 취지에 반하는 방법에 의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0억엔을 상회하는 금액을 모집한 경우인 4단체에 대해 미지정 사례가 있었음
 - * 오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 332억엔
 - 시즈오카현(静岡県) 오야마쵸(小山町), 195억엔
 -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코우야쵸(高野町), 186억엔
 - 사가현(佐賀県) 미야키쵸(みやき町), 99억엔

자료 : 총무성 보도자료(2021.09.17.),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총무대신의 지정(ふるさと納税指定制度に係る総務大臣の指定)”

27/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미지정단체의 사례(2): 답례품비율 3할초과 또는(or) 지역 생 산품 이외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2억엔을 상회하는 금액을 모집한 43 개 단체에 대해 지정대산 기간을 4개월로 함
*신청서 제출한 전 지자체의 고향납세 수입액 평균이 2억엔강(미지정4단체를 제외), 기부 금 모집을 적절히 수행한 지자체의 수입액 평균이 1억엔강임을 종합적으로 감안
- 지정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차 7월에 10월 이후 1년간의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제도 하에 있어서 실제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지정 계속의 적부를 새롭게 판단하게 됨

都道府県	市区町村	都道府県	市区町村
北海道	森町(48) 八雲町(28)	大阪府	岸和田市(5) 貝塚市(4) 和泉市(7) 熊取町(20) 堺町(2)
宮城県	多賀城市(9) 大崎市(2)	和歌山県	湯浅町(11) 北山村(5)
秋田県	横手市(4)	岡山県	総社市(6)
山形県	酒田市(6) 庄内町(2)	高知県	奈半利町(5)
福島県	中島村(4)	福岡県	直方市(14) 飯塚市(11) 行橋市(32) 中関市(4) 志免町(4) 赤村(6) 福智町(6) 上毛町(28)
茨城県	稲敷市(5) つくばみらい市(10)	佐賀県	唐津市(2) 武雄市(14) 小城市(11) 吉野ヶ里町(3) 上峰町(13) 有田町(6)
新潟県	三条市(5)	宮崎県	都農町(20)
長野県	小谷村(16)	鹿児島県	鹿児島市(5) 南さつま市(19)
岐阜県	美濃加茂市(2) 可児市(2) 富加町(5) 七宗町(20)		
静岡県	焼津市(16)		

자료 : 총무성 보도자료(2021.09.17.),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총무대신의 지정(ふるさと納税指定制度に係る総務大臣の指定)”

28/59

III. 일본 고향납세제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최근 동향

- 고향납세제도의 발전 추이

- 2008년 5월 1일 처음 시행 이후 2012년도까지는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음
- 2013년도부터 기부 건수 및 기부액 규모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
- 기부 건수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도에는 약 5만여 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도 10만 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도 40만여 건, 2014년도에는 190만여 건,
- 고향납세 **한도를 2배로 확대**: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액 2,000엔을 뺀 전액이 공제되는 한도액인 「고향납 세 한도(ふるさと納税枠)」가, 2015년1월1일 이후 **약 2배로 확충(지방창생과 연계)**
-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726만 건(전년 대비 3.8배)을 상회하는 등, 제도 시행 8년만에 무려 **135배나 급증한 가파른 성장세**
- **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 도입(2015년4월1일 이후 납부분부터 해당됨)
- 2016년도 지역재생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한 **지방관 종합전략 책정**, 지자체 대상으로 세 제 우대조치

29/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정책

30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7년도 ('17.4.~ '18.3.)	4월	지자체로 총무대신 통지문 발송	- 기부액에 대한 답례비율이 높은 답례품에 대해, 답례비율을 조속히 3할 이하로 조치할 것을 요청 - ①금전적 유사성이 높은 것, ②자산성 높은 것, ③가격이 고액인 것 등을 보내지 않도록 요청
		전국시장회 및 정촌회 합의	- 총무대신 통지에 입각하여 전국 시장회 및 정촌회의 대응을 위한 합의
	5월	수입액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개선 요청	- 4월 조사결과 수입액이 많은 200단체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한 개선을 문서로 요청
	7월	1,100단체에 대한 개선 요청	- 4월 조사결과, 약 1,100단체(상기 200단체 이외)에 대한 도도부현을 통한 개선요청 문서 발신
	9월	총무대신 서간	- "고향납세의 가일층의 활용에 관하여발신
	10월	신프로젝트 착수 및 단체장에 대한 요청	- "고향기업가지원프로젝트", "고향이주교류촉진프로젝트" 착수 발표 - 전국시장회추계불록총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개선 요청
	1월	지자체 실무진에 개선 요청	- 전국도도부현재정과장, 시정초당당과장합동회의에서 개선 요청
	3월	사례집 발간	- 고향납세활용사례집을 공표

31/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조치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8년도 ('18.4.~ '19.3.)	4월 -총무대신 통지를 발 송 -개선상황 조사	· 총리대신 통지 발송 · 답례비율이 3할을 초월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책임과 양 식 있는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 지역자원 활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이외의 송부”에 대해서 양식 있는 대응을 요청 · 지자체에 대해서 신속한 재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4월 1일 시점의 개선 상황을 조사 · 「전국 도도부현 재정과장·시장·읍장 합동 회의」에서 개선을 요청 · 전국 시장회 및 전국시장총회에서 총무대신 통지를 근거로 한 대응 취지를 재차 확 인
	5월 -청문회 실시 -단체장에 개선 요청 -간부진에 개선 요청	· 개선 상황이 좋지 않은 도도부현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 · 「전국시장회 춘기불록총회」(전국 9 불록)에서 단체장에게 개선 요청 · 「지방재정연락회의」(전국 8불록)에서 각 도도부현 간부에 대해 검토 요청
	6월 -6월1일 시점 상황조 사 -시장회에서 개선 요 청	· 지자체에 대해서 신속한 재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6월1일 시점의 개선 상황 조사 · 전국시장회 창립120주년 기념 · 제88회 전국 시장 회의에서 수장에 대해서 재검토 를 요청
	7월 - 조사결과와 공표 - 통지에 불응하는 12단체 공표 - 조속한 조치를 기 회회견에서 요청	·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통지에 따르지 않고 답례품을 보내고 있는 12 단체※ 를 공표함과 동시에, 필요한 개선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총무대신 각의 후 기자 회 견에 요구 ※답례 비율 3할 초과와 답례품 및 지역 생산품 이외의 답례품을 송부하고 있는 시구정촌으로, 2018년 8 월까지 개선 의향이 없고, 2017년 수입액이 10억엔 이상의 시구정촌: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 기후현 세 키시, 시즈오카현 오야마초, 시가현 오미하치만시, 오사카부 이즈미 사노시,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우 에모초, 사가현 가라쓰시, 우레시노시, 기야마초, 미야키초, 오이타현 사에키시

32/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조치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8년도 ('18.4.~ '19.3.)	7월 -단체장에 대한 개선 요청 -행재정연수회에서 사무차관 강연	· 전국시장회재정위원회, 도시세제조사위원회합동회의에서 단체장에 개선 요청 · 행재정연수회(지방행정조사사회주최)에서 야수다사무차관이 강연(요지: 총무성 통 지에 불응한 사례는 매우 유감 표명, 이 제도 존립위기도 우려, 총무성의 제도적 대응책 검토할 수 밖에 없음)
	8월 -공표된 12단체장에 직접 전화, 진행확인	· 공표 12단체장에 대한 직접 전화, 개선 요청과 함께 개선 진행상황을 확인
	9월 -9월1일시점 개선상 황 공표 -납세대상 제외 가능 성 기자회견에서 표 명	· 9월1일 시점 개선상황 공표 및 “과도한 답례품 송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단체에 대한 고향납세대상외 가능성과 제도 개선을 검토”를 대신(대신大臣) 각의 후 기자회견 에서 표명 · 답례비율 3할초과 또는 지역 생산품 이외 답례품을 송부하는 단체에 대해서 개별 시장총회 과장 앞으로 통지 발송, 11월1일 현재 답례품 개선 추진 내용 등 조사계획 통지
	10월 - 11월1일 시점 조 사 실시 예고	· 11월1일 시점 조사 실시, 조회문서에 ‘현재 제도 개선 검토 중, 이번 조사 보고결과에 따라 각 단체별 개선 진행상황을 확인
	11월 - 11월1일 시점 기 준 초과 단체를 공 표 - 여당세제조사회에 서 제도 검토	· 11월1일 시점, 답례비율 3할 초과 또는 지역생산품 이외 답례품 송부하는 단체 공표, 그 내용 감안하 여 여당세제조사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 표명 · 2019년도 지방세제개정에 관한 지방재정심의회 의견: 지금까지 총무대신 통지 내용도 감안하여, (생략), 제도 취지를 벗어난 지자체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개인주민세 특례공제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

33/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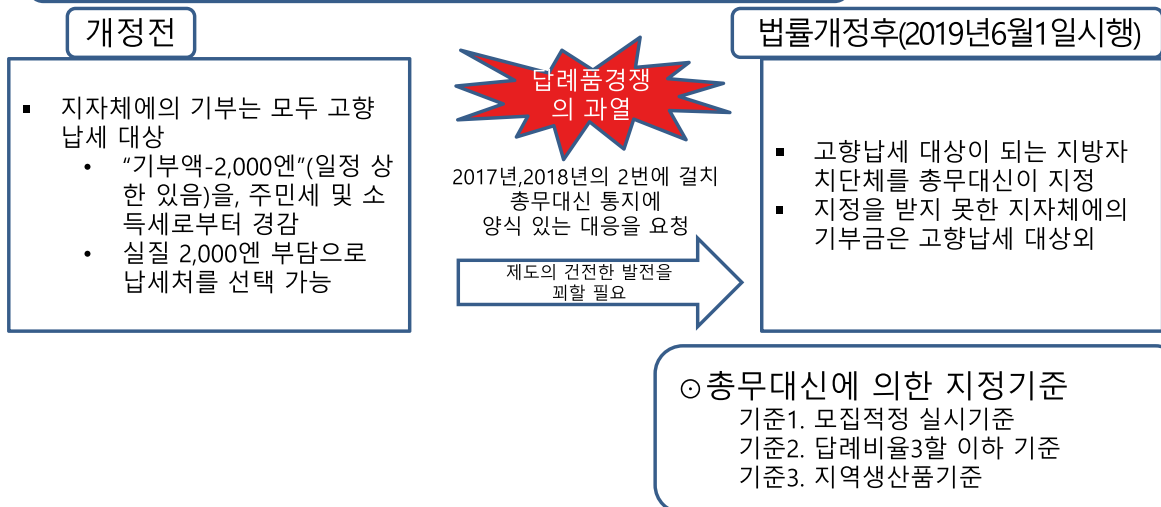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8년도 (‘18.4.~ ‘19.3.)	12월	- 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 - 법 성립 후 신제도 - 고향납세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 여당 의견 정리 - 11~12월 시점과 1월1일 시점 조사를 실시, 조희 문서에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제출 전이긴하나, 보 보고 내용에 대해 답례품 송부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법 성립 후 신제도에 근거하여 지정을 검토할 시 참고하도록 함" 으로 기재 - 정부안 각의 결정
	'18. 2월	-개정안 국회제출 -총무대신 코멘트 발표 - 지방세법개정법안 각의 결정, 국회제출 - 오사카부 이즈미나노시(泉佐野市)의 대응에 대해 총무대신 코멘트를 발표
	3월	-개정법안 성립 -설명회 개최 -지정제도 창설 -지방세법개정법안 성립 -전국 도도부현 대상으로 한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고향납세지정제도 창설 등에 대한 총무대신 코멘트 발표
'19년도 (‘19.4.~ .5.)	4월	- 재정제도 기준 결정, 고시 - 지정제도 관련 신청서 제출 - 지자체 의견청취 -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지정기준 결정 및 고시 -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신청제출(지자체 => 총무성) - 신청서 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청취 실시
	5월	- 지정 및 단체 고시 - 고향납세지정제도 총무대신 지정, 대상단체 고시, 총무대신 코멘트 발표

34/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개정 추진



※ 각 지자체는 지정 받은 기간 동안 각 기준에 적합한 모집 수행 필요
=>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35/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납세 대상 지자체 지정에 관한 관계조문(개정후의 지방세법)

(기부금세액공제)

지방세법제37조의 2
2. 전항의 특례 공제 대상 기부금이란, 동항 제1호의 기부금(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제1호 기부금」이라고 한다.)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 등에 의한 제1호 기부금 모집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기준으로서 총무대신이 정하는 기준(도도부현 등이 답례품 등(도도부현 등이 제1호기부금의 수령에 따른 당해제1호 기부금을 지출한 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물품, 역무(서비스) 그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총무 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및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도도부현 등으로서 총무 대신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①도도부현 등이 개별의 제1호 기부금 수령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 등의 조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무 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모두 해당 도도부현 등이 수령한 당해 제1호 기부금의 액수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도도부현 등이 제공하는 답례품 등이 당해 도도부현 등의 구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총무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조에 있어서 「지정」이라고 한다.)을 받고자 하는 도도부현 등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기부금 모집의 적절한 실시에 관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동항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지자체에 대한 기준

기준① : 고향납세 모집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답례품을 송부하는 지자체에 대한 추가 기준

기준② : 고향납세 모집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기준③ : 답례품은 지장산품(지역 생산품)으로 할 것

36/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기준1. 고향납세 모집의 적절한 실시 기준

1) 제도 취지에 적합한 모집 방법

1. 지자체에 의한 제1호 기부금[도도부현, 시정촌 또는 특별구에 대한 기부금]의 모집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추진하지 않을 것.
① 특정인에게 사례금, 기타 경제적 이익의 공여를 약속하여, 해당 특정인에게 기부자를 소개시키는 방법, 그 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모집
② 답례품 등을 강조한 기부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전 광고
③ 기부자의 적절한 기부처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이용한 정보 제공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지를 두는 사람에 대한 답례품 등의 제공

2) 경비 총액 5할 이하

2. 각 연도에 있어서 제1호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이, 해당 각 연도에 수령한 제1호 기부금 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각 연도에 있어서 수령한 제1호 기부금 합계액이 적고, 그 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총무대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타 자치단체에의 막대한 영향

3. 2018년 11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고향납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방법에 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호 기부금의 모집을 실시하여, 해당 취지의 방법에 의한 제1호 기부금 모집을 실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다액의 제1호 기부금을 수령한 지방 단체가 아닐 것.

37/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기준3. 지장산품(地場産品)(지연 생산품, 지역 생산품)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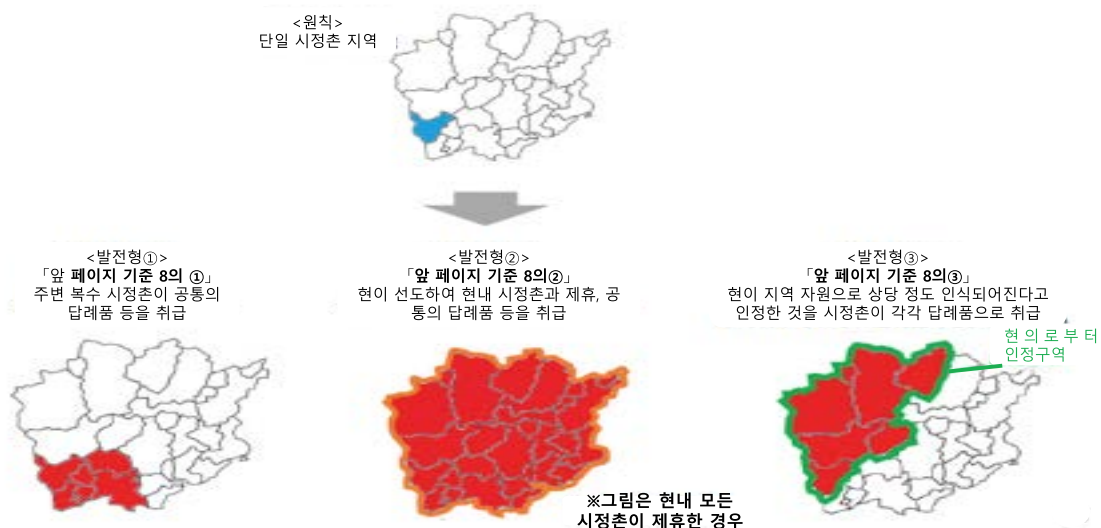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생산된 것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답례품 등의 원재료의 주요 부분이 생산된 것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답례품 등의 제조, 가공 그 외의 공정 중 주요한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 것.
4. 답례품 등을 제공하는 시구정촌의 구역 내에서 생산된 것이며, 인근의 다른 시구정촌의 구역내에서 생산된 것과 혼재한 것(유통 구조상, 혼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일 것.
5.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생산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상품, 오리지널 상품, 그 외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형상, 명칭 그 외 특징으로부터 해당 지자체의 독자적인 답례품인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
6. 전 각호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과 해당 답례품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답례품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것.
7.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의 주요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일 것.
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일 것.
 - ① 시구정촌이 인근의 타 시구정촌과 공동으로 이들 시구정촌의 구역 내에서 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동의 답례품 등으로 하는 것
 - ② 도도부현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내 복수의 시구정촌과 제휴하여, 해당 제휴 시구정촌 구역 내에서 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의 공동의 답례품 등으로 하는 것
 - ③ 도도부현이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 복수의 시구정촌에 지역 자원으로서 상당 정도 인식되는 것 및 해당 시구정촌을 인정하여, 해당 지역 자원을 해당 시구정촌이 각각 답례품 등으로 하는 것
9. 지진재해, 풍수해, 낙뢰, 화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그 피해를 받기 전에 제공하던 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답례품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일 것.

38/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기준3. 주변 시정촌,도도부현과의 제휴에 의한 지역 특산품의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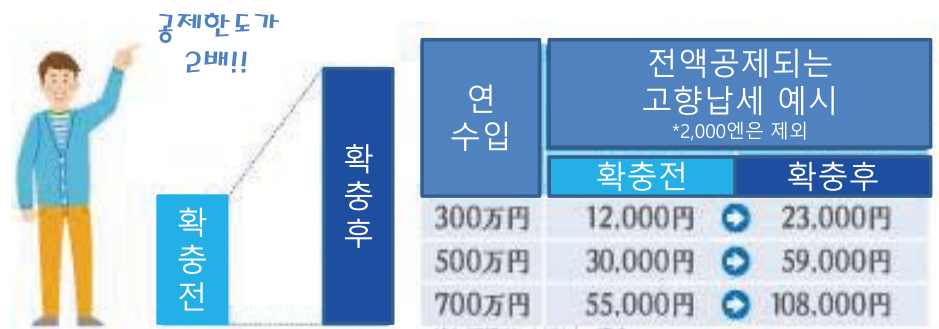
39/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2015년도 세제도 개정에 따라 고향납세 한도가 2배로 확대

- 고향납세는 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인구감소대책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다양한 의의를 가지는 제도임.
- 이러한 점을 살려, 정부의 가장 중점 과제인 「지방창생」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세제개정으로 고향납세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짐
-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액인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되는 한도액인 「고향납세한도(ふるさと納税枠)」는 2015년 1월1일 이후, 약 2배로 확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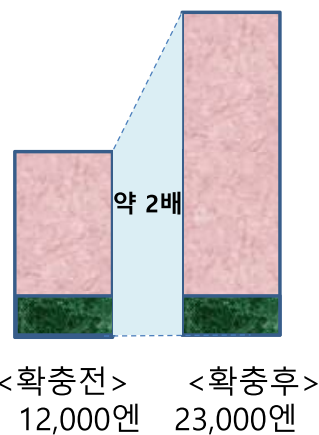
40/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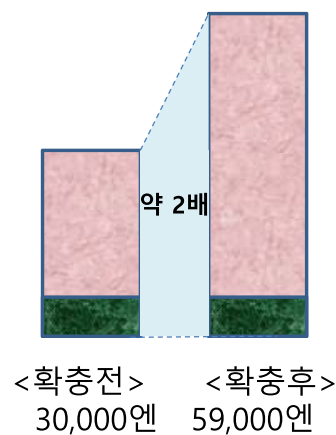
<케이스별 구체적인 사례>

* 부양가족이 배우자만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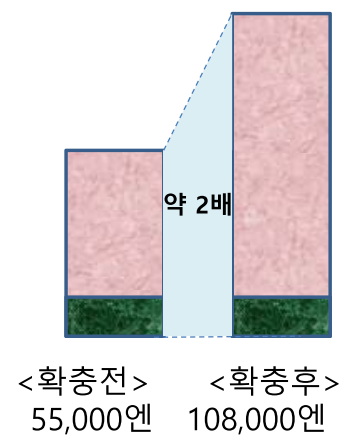
- 연수입 300만엔인 사람의 경우 고향납세한도



- 연수입 500만엔인 사람의 경우 고향납세한도



- 연수입 700만엔인 사람의 경우 고향납세한도



기부금공제 대상외 (2,000엔) 공제액

41/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절차의 간소화(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의 창설), 2015년4월1일 이후 납세부터 적용)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가 고향납세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향납세의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인 “**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가 창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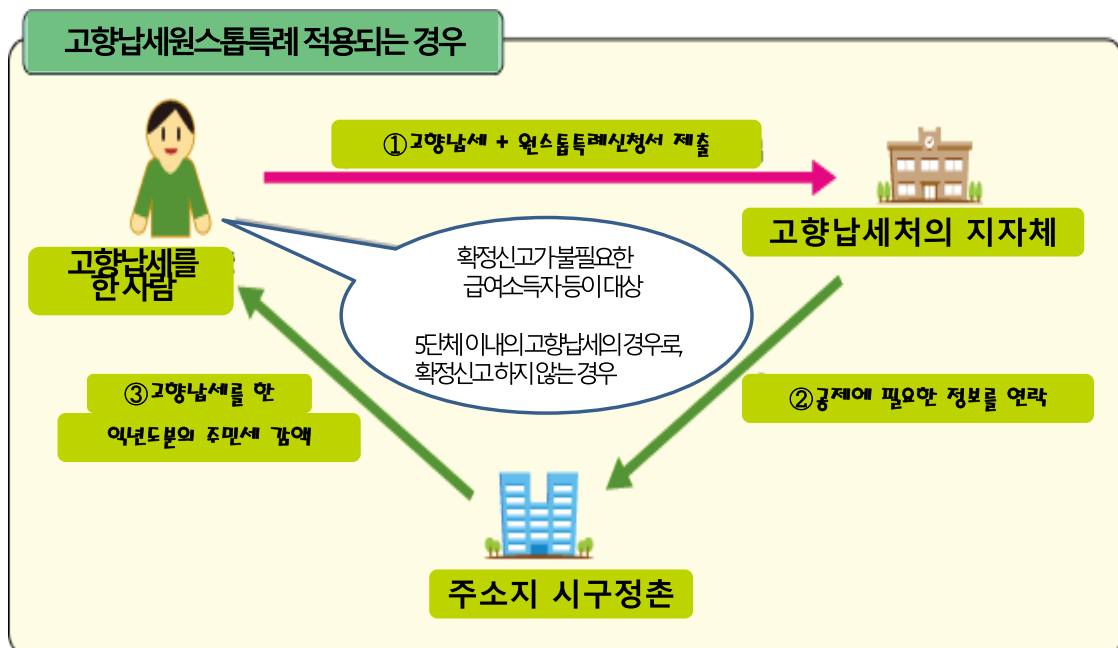
-특례 신청에는 고향납세처의 **자치단체수가 5개 이내이며**, 고향납세를 할 때 각 납세처에 **특례 적용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향납세원스톱 특례 적용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에서의 공제는 발생하지 않고, 고향납세를 한 다음 연도의 6월 이후 납부한 **주민세**에서 감액되는 형태의 **공제**가 이루어짐

42/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43/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일본은 2016년 지역재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판 종합전략 책정한 지자체 대상 세제 우대조치

※단, 지방교부세의 불교부단체나, 시정촌 중 전 지역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의 지원대상외 지역인 단체(동경도, 23특별구, 동경원 소재하는 불교부단체(18시정(市町)은 제외

-우대조치 받기 : 지방판종합전략에 위치 부여한 사업이어야 함. 일자리 창출과 결혼, 출산, 육아 등 관점에서 효과가 높은 지방창생 사업(중요업적평가 지표(KPI)의 설정, PDCA의 정비 등)에 대하여 지역재생 계획을 책정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됨.

- 아울러 인정 받은 지역재생계획에 기재된 지방창생 사업에 기업이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부에 대해 우대조치 가능

※ 단, 기업이 본사가 입지한 지역에 기부한 경우, 우대조치 대상에서 제외

우대조치 내용 : 현행 손금산입 조치에 더해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 세액공제 조치 받음

· 기부액에 대한 공제액 비율 :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 합계가 기부액의 30%가 됨.

- 즉, 법인주민세에서 기부액의 20% 공제, 법인주민세로 20%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인세로 공제(단, 기부액의 10%가 한도)하며, 법인사업세에서 기부액의 10%를 공제하게 됨.

- 납세액에 대한 공제액의 상한은 법인주민세 20%, 법인사업세 20%, 법인세 5%임.

- 1기업의 1사업 당 기부액 하한액은 10만엔

44/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기부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행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를 한 기업에 대해 기부의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1) 기부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공여하는 것
- 2) 입찰과 인허가로 편익을 도모하는 것
- 3) 유리한 이율로 융자하는 것 등

- 일본의 내각부는 2016년의 사례를 보면, 대상 사업을 8월(제1차)에 102사업수(총323억엔, 이 중 2016년도 47억엔), 11월(2차)에 총 55사업수(총356억엔, 이 중 2016년도 76억엔)을 결정,

- 그 주요 사업 분야는,

- 1) 일자리 창출(지역산업진흥, 관광진흥, 농림수산업진흥, 로컬이노베이션, 인재육성과 확보 등)
- 2) 지방으로 인력 유입(이주 및 정주 촉진, 생애 활약 마을 등)
- 3) 일하는 방식 개혁(저출산 대책, 일하는 방식 개혁 등),
- 4) 마을 만들기(작은 거점, 콤팩트 시티 등)

45/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2016년도에 창설된 기업판 고향납세(지방창생응원세제)는, 정부가 인정한 지자체의 지방창생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이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3할을 해당 기업의 법인관계 세금으로부터 세액공제하는 체계임. 이에 따라 통상 손금산입에 의한 경감효과(기부액의 약 3할)를 합하여, 최대 기부액의 약 6할이 경감되며,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은 약 4할까지 압축됨



세목별 특별조치내용

- ① 법인주민세 : 기부액의 2할을 세액공제(법인주민세 법인세할액의 20%가 상한)
- ② 법인세 : 법인주민세의 공제액이 기부액의 2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부액의 2할에 상당한 금액에서 법인주민세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기부액의 1할, 법인세액의 5%가 상한)
- ③ 법인사업세 : 기부액의 1할을 세액공제(법인사업세액의 20%가 상한)

46/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총무성으로부터의 특별교부세 조치

1) 기업가에 매칭보조한 경우 총무성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조치세목별 특별조치내용

- ① 대상단체: 도도부현(都道府県)、시구정촌(市区町村)
- ② 대상경비
고향미래투자자가 기업가(사업)를 특정하여 고향납세를 한 경우에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해당 기업가에 보조한 금액(이하,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금액" 이라고 함)에 매칭하여 지자체가 기업가에게 사업 창업의 초기 투자비용(시설정비비, 기계장치비, 비품비)을 보조하는 경우 해당 보조에 필요한 경비. 단, 1사업당 대상경비의 상한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함
※ 시설정비비, 기계장치비, 비품비의 구체적인 사례
· 시설정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공사, 수선 및 구입 경비(용지취득비 제외)
· 기계장치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설계, 공사감리, 수선, 구입 및 리스·렌탈비용
· 비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품 구입 및 리스·렌탈 경비
- ③ 조치내용
상기대상 경비 x 조치율 0.5 x 재정력보정
(1사업당 대상경비 상한은, 고향납세 재원에 보조하는 금액 또는 2,500만엔 중 적은 금액)

자료: 일본 총무성: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地域における起業支援及び地域への移住・定住の推進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file/report20171027-02.pdf

47/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총무성으로부터의 특별교부세 조치

2) 기업가로부터 제안된 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조치

① 대상단체: 도도부현(都道府県)、시구정촌(市区町村)

② 대상경비

클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지자체로부터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기업가에게 다음과 같은 대상 경비로 함

- 기업가가 제안한 사업을 심사 하는 외부 전문가의 보수 등
- 기업가의 모집

단, 지자체로부터 기업가에게의 보조는 대상경비에 미포함

③ 조치내용

상기 대상경비 x 조치율 0.5 x 재정력보정

자료: 일본 총무성: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地域における起業支援及び地域への移住・定住の推進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file/report20171027-02.pdf

48/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활용 사례집>



자료 : <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portal/pdf/h31kigyojirei.pdf>

49/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총무성에서는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起業家)지원, 이주교류촉진을 테마로 하는 지원책을 실시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起業家)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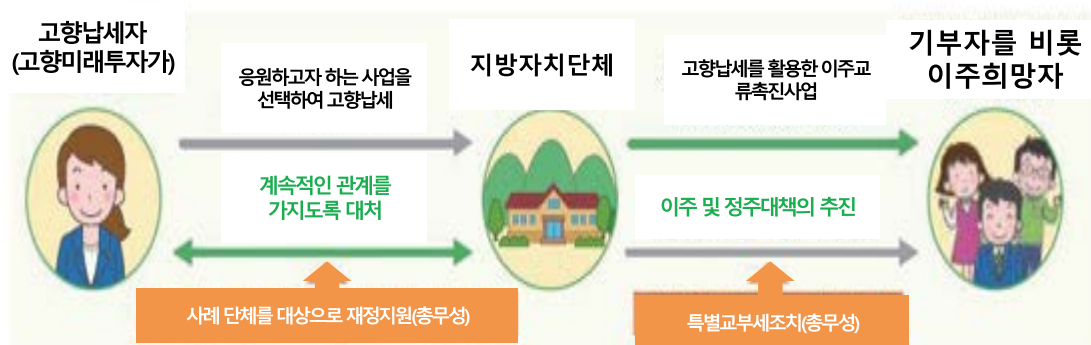


50/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이주교류촉진프로젝트 지원책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ain_sos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support/

51/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1. 중앙정부

✓ 고향이주교류축진프로젝트 지원책

- 목적 : 과소지역 등을 비롯한 지방권에서는 뚜렷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만들기를 담담할 일손 부족에 직면, 고향납세 구조를 활용하여 이주교류를 추진
- 개요 : 지자체는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고향납세를 모집, 이주교류축진사업을 실시
 - 기부자는 이주 등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기부자를 "고향 미래투자가"로 위치를 부여,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속적인 인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며, 더욱이 기부자를 비롯하여 이주희망자에 대한 이주·정주대책사업을 전개
- 특별교부세 조치 등 :
 - 1) 총무성은 지자체의 이주 및 정주 대책 추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조치 지원
 - 정보발신, 이주체험, 취직지원, 주거지원의 대상사업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제외)
 - * 대상경비는 해당 지역의 이주나 정부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한하며, 관광과 산업진흥 등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하는 복합적인 사업과 일반적인 지역활성화 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이주와 정주 대책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경비에 한정
 - 산입율 0.5 X 재정력보정
 - 2) 이주 코디네이터 또는 정주지원원(定住支援員)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교부세 조치
 - 이주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과 이주자에 지원하며, 이주 코디네이터 또는 정주지원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비 등 및 활동경비를 대상으로 함
 - 1인당 350만엔 상한(검임의 경우 40만엔 상한)

52/59

IV.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2. 지방정부

● 기부금보다 공제액이 많은 경우 발생, 특산품 발굴 대책

1) 2016년도의 경우 지자체 462개소, 전체 ¼을 넘는 경우 발생

유출초과 도시로 대표적인 곳은 요코하마시의 경우 최대 55억엔임(기부시민 11만명, 전년보다 70% 증가), 나고야시 31억엔, 동경도 세타가야구 30억엔, 도도부현 중에서는 동경도 466억엔

2) 지방교부세로 적자 보전이 어려운 경우 발생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도로 인한 적자액의 75%는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동경도, 동경 23구, 가와사키시 등은 유출초과분 전액이 세수감액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불만이 발생하기도 함

3) 답례품 신설 및 폐지 지자체 발생

- ① 조금이라도 유출초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답례품을 준비하지 않았던 도시부 지자체에서도 답례품을 서정하는 곳이 증가(神奈川県藤沢市(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마라톤 우선참가권, 쿠루징티켓 등), 茨城県つくば市(이바라키추쿠바사시)에서는 전동2륜차 공도 주행투어 등
- ② 답례품 경쟁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단체장 결정으로 답례품 폐지(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埼玉県 所沢市). 대신 기부에 대한 감사장을 보냄. 이로 인해 2017년부터는 기부금 0엔이 됨.

자료: 후루사포홈페이지 <https://furusapo.fururi.jp/article/problem-explanation>

53/59

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4

V.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고향납세제도의 장단점을 통한 시사점

장점(긍정적인 측면)

1. 세금이 공제된다는 점
2. 특전(답례품)이 제공된다는 점
3. 기부금의 사용처 선택이 가능(신뢰관계 형성)
4. 납세자의 납세액 및 납세지 선택(지방 자치 패러다임전환)
5. 고향의 중요성 및 애향성 고취
6. 지자체의 납세자 존중(자치의식 진화)
7. 지자체간 경쟁(지방경영시대 특성 발현)
8. 수평적 형평성 제고, 지역간 세수편차 완화, 재정격차 축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9. 지역특산물 관심 증대, 세수증대, 향토 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고용 증대 촉진
10. 지자체 간 인적 교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단점(부정적인 측면)

1.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지방자치원칙 위배)
2.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
3. 기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
4. 세원의 제로섬 게임, 지역간 갈등 초래
5. 재정 취약지역으로 이전 보장 없어 수평적 형평성 효과 미미
6. 세수 예측성 부정확, 세수추계 불안정
7. 현세대 출향민 대상 감정에 호소, 장기적 대안 불가능
8. 득보다 실이 많은 지자체 등장
9. 답례품 관심 높아 고향사랑 왜곡
10. 인기 및 고가 답례품 지자체로 쏠림현상(재정불균형 문제 야기)
11. 지역내 생산 불가능할 경우 타지역 위탁생산, 수입 역외유출

55/59

V.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성공적 정착

- 2008년 고향납세제도 도입 이후 2013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
- 도입 이후 8년 만에 기부 건수는 135배, 기부액 20배 이상 기록
- 성공적 성장과 정착의 배경에는 "답례품 제공"과 "세제 및 세정의 개편"을 들고 있음(오오하시, 2015)
 - 1) 가장 핵심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답례품**
 - ① 기부자의 70% 가량이 답례품 제공이 가장 큰 기부 동기가 된다고 응답, 지자체의 57%가 "답례품의 충실"을 가장 큰 고향납세 유치 수단으로 인식
 - ②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쌀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 집중, 그러나 점차 품목 다양화, 고급화 추세
 - 2) 다음으로 고향납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각종 납세 환경의 정비**
 - ① 2012년부터 자기부담액을 종전의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 ② 2015년 1월부터 주민세 공제 특례 한도를 10%에서 20%로 두배 인상
 - ③ 2015년 4월부터 납세절차를 간소화(확정신고 불필요)한 '원스톱특례제도' 창설
 - ④ 신용카드 납부 및 전자신청

※ 2015년도(2014년 실적) 광역지자체 순 기부수입이 총 157억엔, 기부금이 세입 초과하는 지자체도 10곳 이상 등장하는 등 큰 성과(물론, 경비를 제외하면 적자 지자체도 있었음)

56/59

V.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고향사랑기부금에 주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중앙정부
 - ✓ 법률 제정 후 후속조치로서의 지역 단위의 운영계획 수립 필요
 - 법에 근거하여 지역단위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기본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
 - ✓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 **예방 조치** 필요
 -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정제도**를 통해 양식에 어긋나는 기부금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도 마련 필요
 - ✓ 우수 사례 발굴 및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제도 운영 측면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 및 **지자체에 확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 우수 운영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 ✓ 클라우드펀딩형 사업에 대한 **총무성의 재정지원**
 - 기업가 지원을 위한 총무성의 특별교부세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 고향이주교류촉진사업에 대한 사례단체 재정지원 및 이주정주 특교세지원
 - ✓ 기부자의 기부 절차 및 사후 세액공제 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마련
 - 일본의 **원스톱특례제도**와 같이 관련 절차 전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부자 입장에서 편리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7/59

V.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고향사랑기부금에 주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지방정부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필요
ex) 시마네현(島根県) 오난초(邑南町) 조례제정 사례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오난초가 미래 활발한 성장, 발전, 자립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마을과 생활의 고향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활력 가득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설치)

제2조 전조에 규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오난초 후루사토(고향) 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적립)

제3조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된 기부금액으로 한다.

(기금 관리)

제4조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의 예금 그 외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금의 운영 수익금 처리)

제5조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며, 이 기금에 예치한다.

(기금의 교체 운용)

제6조 초장(町長)은, 재정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확실한 이월 방법, 기간 및 금리를 정하고, 기금에 속한 현금을 세계(歳計)의 현금으로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금 처분)

제7조 기금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위임)

제8조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장(町長)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8/59

V.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 답례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 최소의 답례품 경비 지출

- 지역 생산품 중 고가의 품목이 아니더라도 기부자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할 것임

※ 일본의 고향납세 관련 경비 중, 답례품 경비가 가장 큰 비중(총비용의 85% 이상, 조달 및 배송)을 차지, 고향납세제도의 있어서 약과 독을 동시에 제공

- ✓ 유인책 발굴 노력 필요

- 중앙정부 :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지정제도 도입도 검토 필요
- 지방정부 : 양식 있는 사업 추진 전제, 지역을 대표하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 발굴 중요

- ✓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기부금 모집 전략 필요

- 지역 특산품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 정책(고향 및 기부 대상지 방문, 체험형 방문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

※ 지역의 문화관광시설 입장권, 농업관련 체험 이용권, 테마파크 시설 이용권 등의 답례품 제공 가능
지역 특산품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 정책(고향 및 기부 대상지 방문, 체

- 일본의 고향납세의 사용처로는 주로 건강·의료·복지, 교육·인재육성, 환경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사업처 발굴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59/59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법 제정('21.10월), 시행('23.1~)



운영 체계



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 도입배경

▶ 지역 인구감소(2000년 ~ 2020년 간)



- 전국 시군구의 66%(151개) 인구감소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 출처: 통계청

▶ 지역경제 격차 심화



4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 • 도입배경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2020년 재정자립도(%)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악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5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I • 추진경과 - 제도도입



법안 최초 발의

2009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행안위 법사위 통과

2020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법 개정

2021. 12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시행

2023. 1. 1

2016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2021. 10월

법 제정



2022. 1~12월

시행령 및 조례제정
(기부시스템 구축)



6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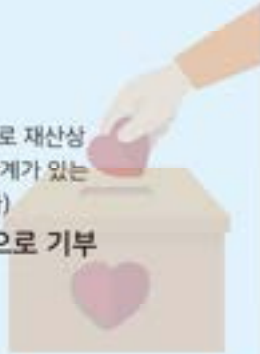
III • 주요 내용 - 기부주체·한도액

기부자·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의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기부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연간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합산



7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II • 주요 내용 - 기부자(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예정)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 ~	16.5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세액 분담 비율

- 국가 91%, 지자체(주소지) 9%



8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II • 주요 내용 - 답례품·사업시행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을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조례로 정함)

※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9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II • 주요 내용 - 모금 홍보·처벌

기부금 모금·홍보

- 광고·정보통신 매체 활용(개별모금활동 불가)



모금방법 위반

- 호별 방문, 개별 통화·서신송부, 동창회·향우회, 개인 SNS 등

규정 위반시 처벌

- 개 인**
- 누구든지 타인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시
 -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적극적 권유·독려 시
 - 모금방법을 위반하여 기부금 모금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자체**
- 법을 위반한 자치단체는 기부금 접수 제한
→ 위반사실 공표, 다음 회계년도 1년 이내 기부금 모금 제한

10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III 주요 내용 - 심의·감독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예시)



의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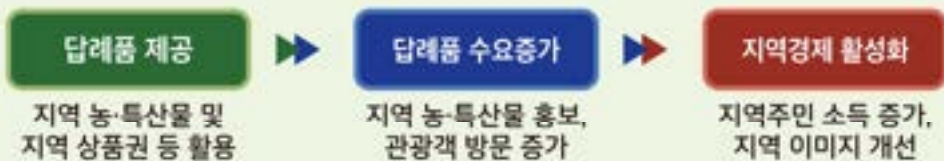


모금부터 사용까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IV 기대효과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V • 향후 계획

관련법령의 제정 등

시행령 제정
(’22. 7월 예정)

조례 제정
(’22. 하반기)

시스템 구축
(~ ’22. 12월)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 정보·아이디어 공유
- ✓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지자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V • 향후 계획

시행령 제정 내용(안)

- 모금 제한 기간(최고 12개월 제한)
- 모금 가능한 광고매체 유형
- 모금 접수 방법 및 절차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 기금운용 및 총당비용(100분의 15이내)
- 정보시스템 구축
- 결과 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 고유 식별 번호의 처리

조례 제정 내용(안)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용도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 답례품의 종류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 답례품 제공 제외 업체



14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V • 향후 계획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부자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가 원스톱 처리



지자체

기금관리, 답례품 관리, 세액공제 통보, 기부금 운용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부정모금 방지 및 위반사실 공표, 교육·홍보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V • 향후 계획 - 홍보 및 소통



- 언론, 방송 홍보
- 광고매체 홍보
- 제도 홍보

- 전문가 초청 토론회
- 권역별 공무원 연찬회
- 자문단 컨설팅
- 정책연구회 운영(지속)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주 현 정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06. 10.



목 차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3.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예상 수입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5. 결론 및 시사점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도입 배경

- 개인이 거주지 외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수도권 집중 현상,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5가지 세부추진과제
 - 1)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2)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3)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4)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5)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2021.10.19.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 2023.1. 전국적 시행 예정
 - 일본 2008년 후루사토납부제 시행(고향납세제도)

2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제주 여건

- 제주는 전국 1% 인구, 낮은 출향민→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액 낮을 가능성
- 단, 지역별 답례품 경쟁 과열
- 제주는 매력적인 자원이 많고,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여 경쟁력 있을 것

제주의 필요성

- 향후 답례품 제공 활발해지면 제주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 제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3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지역별 연구 현황

강원연구원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육동한, 박상현, 염명배, 전지성, 2017.10.)
광주전남연구원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300, 주요 쟁점과 지자체의 대응방안(2022.03.02.)
경기연구원	▪ 자치분권시대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이현우 외, 2020.11.)
경남연구원	▪ (주간 브리핑)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과 경남의 대응방안(2018.05.14.)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눈앞,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2020.10.27.)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실시까지 앞으로 1년, 이렇게 준비하자!(2022.01.03.)
대구경북연구원	▪ (대경 미니세미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신두섭 발표, 2021.11.25.)
대전세종연구원	▪ 고향사랑기부금제(고향세) 도입과 대전광역시 대응방안(유병선, 이창림, 2020.10.14.) ▪ 일본 후쿠사토세 제도 소개, 국회 입법동향, 제도로입이 대전광역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향 제시
전북연구원	▪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김동영 외, 2016)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김동영, 2022.04.01.)
제주연구원	▪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연구(2022.01.27.)
충남연구원	▪ 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신승근, 2018) ▪ 고향사랑기부제 국외사례 연구(유학열, 2021.12.31.) ▪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진행중인 전략과제, 03.01.~10.3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보고서)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홍근석, 2019) ▪ (기고논문)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홍근석, 염명배, 신두섭) (기고논문)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주만수)

출처: 각 연구원 홈페이지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고향사랑기부제법(『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조문	주요내용
제1조 목적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제2조 정의	▪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을 말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해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제3조 타 법률 관계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사용 등에 관해 「기부금법」 적용 제외
제4조 모금 주체·대상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
제5조 기부의 제한	▪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제6조 기부·모집 강요 금지	▪ 누구든지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됨 ▪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해서는 안됨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고향사랑기부제법(『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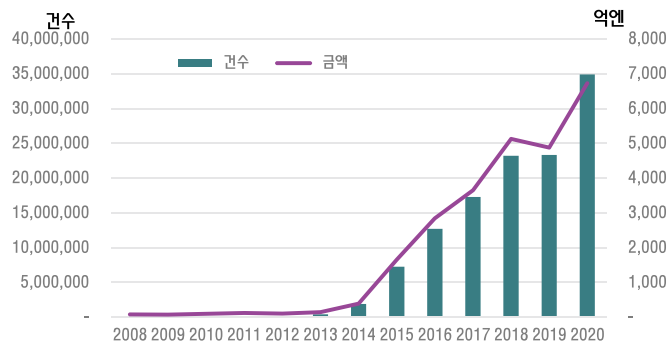
조문	주요내용
제7조 모금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 모금 가능(개별 전화, 서신, 전자 전송매체, 호별방문, 사적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을 통한 권유·독려는 불가함) - 모금의 방법·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조 접수·상한액	-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전자자금이체, 지방자치단체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단체장 명의 영수증 발급 -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함
제9조 답례품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타 조례에 의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음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등은 제외됨
제11조 기금 설치 등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함 기금은 기부금을 제원으로 하고, 모집·운용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지원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6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도입내용

-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세수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도입(신두섭, 염명배, 2016)
 -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 기부시 기부액 중 2천엔 초과 금액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를 일정 상한액까지 전액 공제
 -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수령 증명서와 답례품 전달(경기연구원, 2020)
- 2015년 이후 원스톱 특례제도 시행과 세액공제 확대, 답례품 다양화, 지자체 홍보 강화
 - 2008년 5만건, 81억엔 → 2015년 726만건, 1,653억엔 기부



7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 답례품 종류

-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다양화, 고급화로 지역의 숙박 할인권, 이벤트 티켓, 노트북, TV같은 고가의 가전제품
-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에 공감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government crowd funding) 등
- 우수 운영사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 유바리시 등
-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기부금액의 30% 이내 제한

8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 답례품 운영 사이트

- 다양한 사이트에서 고향납세제도 플랫폼화 운영
- 대표사이트- 고향초이스(www.furusato-tax.jp), 트러스트뱅크 2012.9오픈

The screenshot displays the Furusato-tax.jp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the site name and search options. Below, a product listing for 'H1 시노 최고급 햄버거 (160g × 4 개)' is shown with a price tag of 10,000 yen. To the right of the product, several award medals are displayed, including '상품수 NO.1', 'No.1', and 'No.1' with specific counts like '37만 이상' and '약 1,600개 지자체'. The bottom part of the image shows a '기부금' (donation) button and a '구매' (purchase) button.

9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공제상한액 설정

The simulation interfac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かんたんシミュレーション (Easy Simulation):** A summary of the simulation results.
- かんたんシミュレーション (Easy Simulation):** A section for selecting family members and their income.
- STEP1 家族構成を選択する (Select Family Composition):** A section for selecting family members and their income.
- STEP2 年収を選択する (Select Annual Income):** A section for selecting the annual income of the contributor.
- あなたの家族の所得はいくら? (What is your family's income?):** A section for selecting the family's income.
- あなたの家族構成は? (What is your family composition?):** A section for selecting the family composition.
- あなたのシミュレーション結果 (Your Simulation Results):** A summary screen showing the total contribution amount (approx. 11,000 yen) and the resulting tax deduction (approx. 11,000 yen).

10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답례품 선택-카테고리별, 금액별, 사용목적별, 지역별

The interface shows the selection of response products based on the contribution amount and purpose. It includes a grid of product categories and a table of contribution amounts.

金額から選ぶ (Select by Amount):

2,000円～5,000円	5,000円～10,000円	10,000円～20,000円	20,000円～50,000円
50,000円～100,000円	100,000円～200,000円	200,000円～500,000円	500,000円～1,000,000円
1,000,000円～			

目的から選ぶ (Select by Purpose):

生活必需品 (Essential Goods)	教育・文化・スポーツ (Education, Culture, Sports)	環境・自然・観光 (Environment, Nature, Tourism)	健康・福祉・高齢者 (Health, Welfare, Elderly)
-------------------------	---	---	--------------------------------------

11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지자체 선정

19 지자체를 찾는다 전국 1,708 모든 자치체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illegible]

2.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기부 사용처 선정(기부사업 선택)



3.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예상 수입

예상기부금 = 잠재 기부자 * 잠재 기부금

잠재 기부자 - 명예도민, 재외도민, 관광객 등

1) 제주가 고향-제주가 고향이면서 제주에 기부하겠다는 비율 31.2%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홍근석, 염명배, 신두섭, 2019 외)

- 재외도민 누적 발급 수 97,655(2021년 기준)명 * 31.2% = 30,468명
- 누적 전출인구 (만19세-65세 미만) 426,734명 * 31.2% = 133,141명
- 국내 재외도민 525,510 * 31.2% = 163,959명

2) 제주가 고향 아님- 국내 거주 명예도민

- 1,891명 * 5.1% * (26/31) = 80,886명

잠재 기부금 - 10,000원 ~ 5,000,000원

시나리오별 분석

14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부자 유치

- 재외제주도민(출향인사)
- 제주인 = 도내 제주인 + 재외 제주인



출처: 민기·고광명(2014), 「제주인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재외(在外)제주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020년 국내 거주 도외제주인 52만6천명, 제주 인구의 78.5%(서울 25만, 부산 22만 등)
- 제주특별자치도민회 16개 단체, 취업, 학업, 사업 등의 동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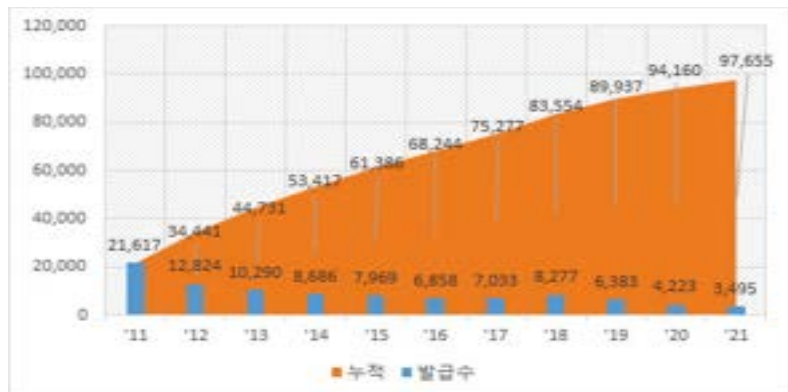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부자 유치

- 전국 최초 '재외도민증' 발급

고향 발전 위해 헌신한 재외도민의 은혜 보답하고 예우를 통하여 자부심, 자긍심 고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지원조례」 제8조(2010년 제정)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며 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재외도민증 발급현황

16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부자 유치

- 재외 제주도민의 제주사회 기증 현황

재외 제주도민의 기증 실적 현황(1960년대~2000년대)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교육사업	공공사업	문화사업	기타
합계	46,000,263	36,228,441	8,178,999	746,683	846,140
1960년대	437,832	277,613	71,992	80,217	8,010
1970년대	1,283,268	338,775	616,405	220,836	107,252
1980년대	11,582,788	7,136,222	3,894,924	317,789	233,853
1990년대	9,558,225	6,281,027	2,825,706	123,320	328,172
2000년대	23,138,150	22,194,804	769,972	4,521	168,853

자료: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2020.10)

17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부자 유치

- 명예도민
 - 1969년 「제주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2013.3.20.전부개정)로 변경 시행 중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제2조)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18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부자 유치

-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를 설치함
 -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19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부자 유치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명예제주도민은 2,021명임
- 제주도는 명예도민에게 제주의 근황에 대한 홍보 및 제주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알리면서 명예도민이 제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명예도민 수여 현황

(단위: 명)

계			국내인			해외동포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21	1,872	149	1,891	1,761	130	24	19	5	106	92	1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부자 유치

일반국민

- 2015년 이후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국내인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어, 제주도는 국내 최고의 인기 관광지임
- 지난 9년간 제주 누적 방문객은 102,908천명으로 이들 중 제주를 자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것을 홍보



21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재외 제주도민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재외 제주도민(명예도민 포함) 네트워크는 국내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한 활동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 활동공간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에서 구상 중인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 직종, 출신지역, 연령 등 활동을 제주도가 지원, 장려
- 재외 제주도민들의 모임이 활성화될수록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홍보 기회가 많아져 이들의 기부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에 흩어져 있는 재외 제주도민과 명예도민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칭) 「밖에 사는 제주사람」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시에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SNS에 제주 밖에 사는 제주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주도에서 제공해 줌
- 이와 같은 사이버상의 공간 구축이 제주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만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오해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함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
 -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22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재외 제주도민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재외 제주도민의 애향심과 제주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동기 부여를 위해 현재 제주도가 시행중인 아래와 같은 재외 제주도민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함
 -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 재외도민회중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및 공원조성사업
 -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등
- 현재 진행 중인 재외도민 증 발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외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야 함, 특히, 제2세대 또는 제3세대 재외도민의 제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2~3세대 제주문화 체험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제2~3세대의 제주에 대한 애향심 강화가 제주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동기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주문화 체험행사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3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조례 제정 및 기금 관리

- 일본 광역자치단체 43개 중 하나인 사가현의 고향기부금 기금 조례(佐賀県ふるさと寄附金基金条例)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명칭: 사가현 고향기부금 기금 조례
 - 체계와 구성: 전문 7조, 부칙
 - 내용
 - 설치 목적
 - 기금 적립
 - 기금 관리
 - 운용수익금 처리
 - 이월운영: 기금 이월 운용 허용
 - 기금 사용(처분): 지사가 정한 사업 중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지사가 정한 사업, 지역재생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기타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등
 - 보칙 및 부칙

24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조례 제정 및 기금 관리

- 제1조는 목적 조문으로서 조례의 제정의 근거와 목적을 제시함
-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제3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나열함
- 제4조는 기금의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제5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함
- 제6조는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
- 제7조는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8조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5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조례 제정 및 기금 관리

제9조는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는 서면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2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3조는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4조는 기금운용계획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5조는 위촉직 위원 등의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6조는 기금의 운용, 회계관리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법규를 예시함

제1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6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답례품 선정

- 「고향사랑기부제법」에서는 기부금액의 상한액(500만원)만 설정된 상태이며, 향후 최소기부금액은 얼마인지, 기부금액을 얼마 단위로 모금할 것인지, 답례품 제공 유무 등에 따라 답례품 선정 및 운영 방안이 변경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선제적으로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가격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부금액별 답례품 제공가능 금액(답례품 한도액)을 확인 필요
- 답례품 배송비, 중간업체 운영비 등의 제반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부금액별 답례품을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답례품 가격구간을 아래와 같이 1~10구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에서 각 금액구간별로 선정가능한 답례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답례품 가격구간 설정

구분	금액구간	구분	금액구간
1구간	~ 1만원 이하	6구간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구간	1만원 초과~3만원 이하	7구간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구간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8구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4구간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9구간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5구간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10구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27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답례품 선정

- 기존 업체 활용
-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등

서귀포시 서귀포in정

카테고리	물품개수
서귀포감귤	24
농산물	47
수산물	30
축산물	46
가공식품	49
체험&관광	39
총합계	235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탐나오

카테고리	물품개수
선박	12
관광지/레저	633
(특산/기념품)농산물	96
(특산/기념품)수산물	931
(특산/기념품)축산물	98
(특산/기념품)가공식품	154
(특산/기념품)화장품/미용	76
(특산/기념품)제주기념품	152
맛집	92
여행사 상품	2476
총합계	4,72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이제주몰

카테고리	물품개수
농산물	79
수산물	64
축산물	66
가공식품	270
화장품	43
공예품	19
생활용품	5
총합계	546

28

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홍보 및 시스템 구축

- 제주공항 광고 매체 활용-수하물 인도장, 출국장, 대기장 등
- 고향사랑기부제도 알림 홍보-신문, 광고, 전단지 등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활용하되 제주의 특수성,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홍보, 시스템 구축 필요
- 초기에 기금 예측 규모가 어려움
- 행정비용 감소 필요
- 관련 전문 센터나 기관 필요, 답례품 전담 기관, 기금 모집 및 운영 관련 기관

29

감사합니다
jejoo@jri.re.kr